

2013 DDA 협상과 향후 대응방안

문	한	필	연	구	위	원		
송	주	호	선	임	연	구	위	원
정	대	희	전	문	연	구	원	
김	수	지	초	청	연	구	원	

연구 담당

문한필	연구위원	연구총괄
송주호	선임연구위원	2장, 3장 집필
정대희	전문연구원	통계 수집 및 문헌 정리
김수지	초청연구원	해외자료 번역 및 보고서 편집

머 리 말

지난 WTO 제9차 각료회의(2013. 12. 7.)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일부인 농업, 무역원활화, 개발 등의 10개 이슈로 구성된 DDA 발리패키지가 합의되었다. 이는 비록 일부분이긴 하지만 2001년에 DDA 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합의를 통해 다자간 통상현안이 타결된 것으로, 우리 농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4가지 이슈(일반서비스,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TRQ 관리, 수출경쟁)가 타결되었고, 무역원활화 협정문도 각료결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체되었던 DDA 협상이 올해부터는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WTO 무역협상위원회는 올해 안에 DDA 타결을 위한 세부 워크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농업분야 협상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관한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워크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한·EU FTA와 한·미 FTA의 발효, 한·중 FTA 협상 가속화 등으로 사실 국내농업에는 DDA보다 FTA가 당장 직면한 위협이다. 그러나 DDA는 WTO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세인하 의무를 부여하며, FTA와 달리 국내보조금의 감축 또한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FTA 못지 않게 국내농업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

DDA 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업분야의 잔여쟁점과 모델리티(modality) 초안 등 협상이슈를 재점검하는 한편, G33(개도국 그룹) 및 G10(수입국 그룹)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국내 농정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DDA 관련 논의를 다시 상기시키고, 향후 협상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4.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군

요 약

2013년 12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는 오랫동안 답보상태였던 다자간 교역체계의 변화를 알리는 DDA 스몰패키지(small package)가 타결되었다.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동안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MC9)에서 농업, 무역원활화, 개발 등의 10개 이슈로 구성된 발리패키지가 합의되었으며, 농업분야 이슈에는 1) TRQ 관리 개선, 2)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관련 평화조항, 3) 수출경쟁 약속 이행 촉구, 4) 일반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TRQ 관리 개선’은 TRQ 소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혹은 비조건적 허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개도국에는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허용’은 개도국이 식량안보를 위해 공공비축을 할 경우 관리가격과 외부참조가격과의 차이를 AMS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이나, 우리나라는 이미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시가구매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가능성은 없다.

‘수출경쟁’ 이슈는 홍콩각료선언(2005)에서 약속한 수출보조 철폐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번 발리패키지에는 WTO 농업협정 부속서2의 허용보조 항목을 일부 추가하는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일반서비스 항목에서 불명확했던 홍수 통제 및 가뭄관리, 토양보존 등 관련 항목들이 허용보조로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게 되었다.

WTO 각료 결정으로 채택된 무역원활화 협정문은 세관절차 관련 GATT 규정의 명확화, 세관 간 정보교환을 포함한 세관협력 강화,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조치 이행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원활화 협정문 중에서 명시적으로 농업분야와 관련된 부분은 협정문 제5조(공정성, 비차별성, 투명성 증진을 위한 기타 조치)의 ‘수입국의 통제·검역 강화 조치 시 규율’과 제7조(물품의 반출

및 통관)의 ‘부패성 상품의 통관절차 원활화’이다.

국내 농업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에 발리에서 합의된 WTO의 무역원활화 조치가 이행된다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확대도 수출대상국들의 무역원활화 이행 수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 합의된 발리패키지는 DDA 협상이라는 전체 틀에서 볼 때 쟁점이 별로 없던 작은 분야이지만,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던 DDA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불안하게 여겨졌던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와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DDA 협상의 미래는 협상의 모든 요소에 녹아들어 있는 개도국 우대조치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 차이가 어떻게 좁혀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대폭 늘린 DDA 농업분야 협상에서 개도국이나 선진국이나의 차이는 UR 협정과 비교해서 국내농업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개도국 지위의 유지가 가장 큰 협상목표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개도국 지위를 완전하게 누리기보다는, 국내농업에 미치는 피해가 작은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선진국 의무사항에 참여하거나, 개도국 권리를 축소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omestic Responses to the WTO/DDA Negotiations in 2013

In Bali, Indonesia, on 7 December 2013, the DDA small package was adopted, which signaled the change of a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at was at a standstill for a long time. At the Nin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held for 5 days from 3 to 7 December, ministers adopted the “Bali Package,” which consisted of 10 issues including agriculture, trade facilitation, and development. The agricultural issue included 1) improvement in TRQ administration, 2) a peace clause on developing countries’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3) a demand for keeping promises of export competition, and 4) expansion of general services.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in TRQ administration, a country with its TRQ fill rate below a certain standard shall change TRQ administration methods to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or an unconditional license. However, developing countries can have flexibility, so Korea will not be affected much.

Permission for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is a proposal that in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developing countries do not have to include the difference between the administered price and the external reference price in AMS. Nevertheless, Korea already abolished the rice purchase system, and changed it to the market price purchase method. Therefore, Korea will not use the permission.

On the export competition issue, ministers presented a political declaration with no legal binding force, reaffirming that abolishing export subsidies that was promised in the 2005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is needed. Also, the “Bali Package” included the Ministerial Decision that added “green box” items of Annex 2 of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The decision clearly classified flood control, drought management, soil conservation, and related items that were unclear in previous general services items as “green box” items.

An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adopted by the WTO Ministerial Decision, includes clarifying GATT articles regarding the customs process, strengthening customs cooperation that includes information exchange among

customs, and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trade facilitation measures. In the Agreement, the parts explicitly related to agriculture are rules for importing countries' enhanced controls or inspections of Article 5 (Other Measures to Enhance Impartiality, Non-discrimination and Transparency), and facilitation of perishable goods' clearance processes of Article 7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In Korean agriculture, market opening is rapidly proceeding due to simultaneous FTAs. However, if the WTO trade facilitation measure that was agreed in Bali is implemented, market opening can proceed faster. The result of agrifood export expansion the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depends on the level of trade facilitation of countries that import Korean agrifood.

The "Bali Package" addresses a small area with few issues in the whole frame of DDA negotiations. Nonetheless, the Package is positively evaluated in that it can develop DDA negotiations that were at a standstill, and reaffirmed member nations' support for and trust in the WTO's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at was considered unstable.

However, DDA negotiations depend on how differences can be reduced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opinions on preferential treatment to developing countries in every element of negotiations. In DDA agricultural negotiations that largely increased special treatment and exceptional measures to developing countries, the status of a developing or developed country can affect Korean agriculture much more than in the UR Agreement. Therefore, our biggest goal in negotiations is securing the status of a developing country. Realistically, we should consider participating in the developed country's duties voluntarily to the extent that their damage to Korean agriculture is small, or reducing the developing country's rights, rather than fully enjoying the status of a developing country.

Researcher: Moon Hanpil

Research period: 2013. 10. 28 - 2014. 1. 31.

E-mail address: hanpil@krei.re.kr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

제2장 WTO/DDA 발리패키지 타결(WTO/DDA 관련 동향)

1. WTO/DDA 협상 동향 5
2. 발리 패키지 타결 8

제3장 농업분야 발리패키지 주요 내용

1. TRQ 관리 개선 11
2. 개도국 식량안보 공공비축 허용 20
3. 수출경쟁 32
4. 일반서비스 확대 36

제4장 무역원활화 주요 내용

1. 무역원활화 협상 타결 39
2. 무역원활화 협상과 농업분야 파급영향 44

제5장 DDA 농업분야 협상 전망과 과제

1. DDA 농업분야 협상 전망 52
2. 협상 전략 및 향후 과제 56

참고 문헌 61

부록 1 발리각료회의 결정문: TRQ관리(영문본/한글본) 62

부록 2 발리각료회의 결정문: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영문본/한글본) .. 70

부록 3 발리각료회의 결정문: 일반서비스(영문본/한글본) 76

부록 4 발리각료회의 결정문: 수출경쟁(영문본/한글본) 78

표 차 례

제2장

표 2- 1. DDA 발리패키지 농업분야 조기수확 결과	10
--------------------------------------	----

제3장

표 3- 1. TRQ 관리방식별 국가별 TRQ 소진율(2002~11년 평균)	15
표 3- 2. 우리나라의 TRQ 관리방식별 소진율(2008~2012년 평균)	17
표 3- 3. 우리나라 미소진 메커니즘 적용 가능 품목 (2013년 12월 현재)	19
표 3- 4. 우리나라 AMS 통보내역(2001~2008)	26
표 3- 5.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실적(2005~2012)	26
표 3- 6. AMS 감축 관련 DDA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Rev. 4)	27
표 3- 7. De-minimis 감축 관련 DDA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Rev. 4)	27
표 3- 8. 주요 개도국의 쌀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29
표 3- 9. 중국의 식량최저수매가 및 임시수매비축가격	31
표 3-10. 수출경쟁 관련 DDA 모델리티 4차 수정안과 G20 제안, MC9 각료선언문 비교	34
표 3-11.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세부항목별 예산집행 실적 추이	36
표 3-12. 우리나라 허용보조 통보내역(2001~2008)	38

제4장

표 4- 1. 제9차 WTO 각료회의(MC9) 무역원활화 협정문 구조	41
--	----

x

제5장

표 5- 1. DDA 농업 모델리티 잔여쟁점 및 주요국 입장	55
---	----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DDA 농업협상의 주요국과 주요 협상그룹	6
--------------------------------------	---

제3장

그림 3-1. 우리나라의 양정개편과 공공비축제의 도입	25
-------------------------------------	----

제4장

그림 4-1. 무역원활화 타결의 경제적 효과 (소득그룹별 무역 비용 감소)	43
--	----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13년 12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는 오랫동안 답보상태였던 다자 교역체제의 변화를 알리는 DDA 스몰패키지(small package)가 타결되었다.
 -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동안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MC9)에서 농업, 무역원활화, 개발 등의 10개 이슈로 구성된 발리패키지가 합의 되었으며, 농업분야 이슈에는 1) TRQ 관리 개선, 2)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관련 평화조항, 3) 수출경쟁 약속 이행 촉구 4) 일반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 이번에 합의된 발리패키지는 DDA 협상이라는 전체 틀에서 볼 때 쟁점이 별로 없던 작은 분야이지만,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던 DDA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불안하게 여겨졌던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와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분위기이다.

- 발리패키지에 포함된 농업분야의 4가지 이슈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DDA 농업협상에서는 여러 쟁점들이 사실상 연계되어 논의되어 왔고, 전체 협상에서도 서로 다른 분야(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가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 타결된 발리패키지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또한, 발리에서 WTO 각료들은 무역협상위원회에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DDA 협상의 잔여쟁점들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작업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2014년에는 빠듯한 협상 일정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2008년도의 DDA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Rev. 4)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잔여쟁점들에 관한 자국의 대응방안을 재검토할 시점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리패키지에 포함된 농업분야의 4가지 의제가 논의된 과정과 최종 타결된 합의내용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향후 전개될 DDA 농업협상의 잔여쟁점과 국내 농업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제9차 WTO 각료회의에 앞서 조기수확을 위한 농업분야의 이슈들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서 본 연구가 추진된 점을 고려하여, 금번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응과 그 결과 또한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 또한 발리패키지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내용과 의의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회원국 간 무역원활화 조치 이행이 우리나라 농식품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DDA 농업협상 동향과 제9차 WTO 각료회의(MC9)의 추진경과를 소개한다.
- 다음으로 발리패키지에 포함된 농업분야 조기수확 이슈들의 쟁점과 논의과정, 타결내용 등을 제시한다.
 - 1) TRQ 관리 개선
 - 2)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관련 평화조항
 - 3) 수출경쟁 약속 이행 촉구
 - 4) 일반서비스 확대
- 4가지 농업이슈 외에도 무역원활화 합의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국내 농식품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다.
- 마지막으로 DDA 협상의 농업분야 잔여쟁점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 등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전개될 DDA 협상을 전망한다.
- 본 연구는 DDA 농업협상에 관한 WTO의 공식문서, 주요 회원국의 제안서, 국내외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 또한, 제9차 WTO 각료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송주호 연구위원)하여 현지 협상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이슈들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DDA 협상에 관한 연구로써 2010년까지는 연구원 자체적으로 매년 1회 수행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제로 주요 협상이슈와 파급영향 등을 분석해 왔다. 하지만 DDA 협상이 정체된 2010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협상진행 상황에 대한 후속 연구가 거의 없었다.
- 이번 연구는 2013년 12월 초 발리에서 열리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조기수확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 특히 이번에 조기수확된 분야인 TRQ 관리 개선방안, 개도국의 식량안보 우대제안, 수출경쟁에 대한 제안들이 그동안 DDA의 다른 쟁점들(민감품목, 특별품목, SSM 등)에 비해 심층적인 연구가 없었던 분야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 또한, DDA/WTO 협상의 무역원활화 분야의 농업 관련 이슈를 점검해 보는 것도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제 2 장

WTO/DDA 발리 패키지 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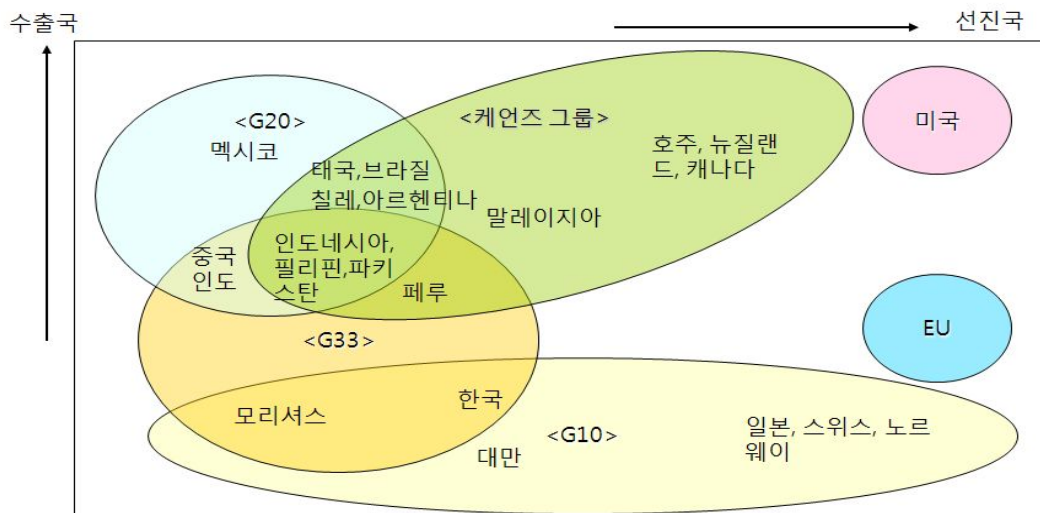
1. WTO/DDA 협상 동향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Doha)에서 출범한 DDA는 12년째 이어지는 협상에도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하고 있었다.
 - 특히, 2008년 하반기에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이르렀지만 주요국들의 의견대립으로 최종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면서 DDA 협상은 이후 5년간 긴 답보상태에 빠져있었다.
 - 이는 DDA 출범 당시 협상종료 방식으로 일괄타결(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동시합의) 방식이 채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요 회원국의 이기적인 자세와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 더욱이 주요국들의 국내 정치일정 외에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지역의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다수의 회원국들은 자국의 경제회복을 우선시하면서 DDA 협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주요 회원국들은 양자 간 또는 지역 간 FTA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면서 WTO가 대표하는 다자무역체제는 위기를 맞고 있었다.

- WTO/DDA 농업 협상 구조는 수출국과 수입국 그리고 중간 입장을 가진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출국과 수입국은 수출제한과 수출경쟁 이슈 등으로 대립해왔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개도국의 특별 우대(Special and Different Treatment: S&D) 등에 관해서 대립해왔다.
 - 수출국은 수입국의 국내보조 감축, 검역완화 등 개방확대를 요구하면서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수출제한 조치 등은 지속하고자 한 반면, 수입국은 수출보조 감축과 수출제한 조치의 투명성 및 규율 강화를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림 2-1. DDA 농업협상의 주요국과 주요 협상그룹



※ G10 : 농산물 수입국 그룹 케언즈 그룹 : 농산물 수출국 그룹
 G33 : 특별품목 주장 그룹 G20 : 수출개도국 그룹

자료: 송주호 외(2009).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 개도국은 선진국에 대해 국내보조, 수출보조, 관세감축, SPS 조치 등 모든 면에서 개도국 특례를 요구하고, 미국이나 EU 등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주도하는 개도국 그룹에 대한 지나친 특별대우를 반대하여, 양측의 입장이 조정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에 놓여 있었다.
- UR 협상까지만 해도 미국과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면, DDA 협상에서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 인도 그리고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이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무역협상의 개별 이슈마다 선진국들과 의견대립을 보이면서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
- 특히, 2008년에는 DDA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도달했지만, 농업분야의 ‘개도국 특별긴급관세제도(SSM) 발동에 따른 추가관세 부과 시 도하라운드 이전 양허세율 초과를 허용하는 조건’을 둘러싸고 미국과 인도의 대립이 발생하고, 비농산물 분야의 ‘분야별 자유화’ 논의에서 중국과 수출국들의 강경한 입장 고수로 최종 합의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각국이 자국의 경제회복을 우선시하여 보호주의 정책을 도입하였고, 주요국들도 DDA 협상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갔다.
- 이에 WTO는 2011년의 제8차 각료회의에서 일괄타결 원칙을 포기하고 쟁점이 적은 분야들만 우선 조기에 타결하기로 합의하지만,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에 포함시킬 분야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협상그룹 간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면서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였다.
- 이러한 흐름에 변화의 기미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1월의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었다. WTO 주요국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DDA 협상의 장래를 깊이 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기회복의 추구하고 함께 DDA 협상의 파국이 몰고 올 국제무역질서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우려하여 DDA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는 만약 발리 각료회의가 일정 수준의 성과 도출에 실패한 채 종료된다면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는 물론 DDA 협상 역시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파국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 주요국들의 합의는 이후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 발리 각료회의에서 실현 가능한 성과도출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조기수확 의제로 거론되었던 무역원활화와 농업분야 일부, 그리고 개발 이슈인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조기타결 대상 분야로 지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2. 발리 패키지 타결

- 제9차 각료회의 개최(2013. 12. 3.) 전까지 제네바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지만 무역원활화와 농업분야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허용 관련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채 발리에서의 정치적 타결로 공은 넘겨진 상황이었다. 이번 발리에서도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DDA 협상은 폐기되고, WTO의 앞날도 위태로울 것이란 위기의식이 모든 회원국 간에 널리 퍼져 있었다(송주호 2013b).
- 각료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이슈는 식량안보를 위한 개도국의 공공비축에 관한 문제이다. 인도를 포함한 G33 국가에서 발의한 동 제안은 개도국이 식량안보를 위해 시장가격보다 높은 관리가격으로 주곡을 구매해서 비축한 다음, 싼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방출하는 정책을 허용보조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 이 제안은 사실 2008년 DDA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Rev. 4)에 이미

제시되어 있고, 당시에는 별다른 쟁점이 없었던 사안이다. 그런데 막상 조기수확 안건으로 제시되자,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 제도가 국내생산을 증대시켜 무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4년 정도의 한시적인 기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발리에서 처음 4일간은 미국과 인도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어 평행선을 달렸으며, 이러다간 발리 각료회의도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회의 일정을 하루 연기하면서 마라톤회담이 이어지고, 항구적 해법을 만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선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 식량안보 문제에 합의가 도출되면서 다른 분야는 일사천리로 해결되었고 결국 발리 각료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발리패키지의 타결로 일단 WTO 체제는 당분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브라질 출신의 신임 WTO 사무총장 아제베도의 리더십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되었다(송주호 2013b).
- 이번 발리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농업분야의 4가지 이슈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별로 없는 사안이다.
- 그러나 그동안 DDA 농업협상에서는 여러 쟁점들이 사실상 연계되어 논의되어 왔고 전체 협상에서도 서로 다른 분야(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가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 타결된 발리패키지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하에서는 발리패키지의 농업분야 4가지 이슈가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DDA 농업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표 2-1. DDA 발리패키지 농업분야 조기수확 결과

	핵심 내용	비 고
TRQ 관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Q 정보공표 등 투명성 강화 - 3년 연속 소진율 65% 미만 시 TRQ 관리방식 변경 - 12차 각료회의(2019)에서 미소진 메커니즘의 개도국 S&D 유지 여부 등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은 관리방식 변경 의무 면제 - 12차 각료회의에서 미 합의 시, 부속서 B에 등재된 국가들은 적용 유보 여부 결정 가능
식량안보 공공비축 허용 (평화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이 식량안보 목적의 비축 곡물 구매·방출로 보조한도 초과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타 회원국은 분쟁제기 자제 - 농업협정 위반에 따른 분쟁으로부터 영구해법 마련 시(11차 각료회의)까지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운영 중인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이 감축보조금을 초과할 시 해당 - 농업위원회 통보의무 및 정보제공, 무역왜곡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활용 가능
수출경쟁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조 등 철폐에 관한 홍콩각료선언(2005) 재확인 - 수출보조 감축기조 유지 등을 촉구하는 각료선언 합의 - 9차 각료회의 이후 수출경쟁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 - 사무국이 회원국의 수출신용, 식량 지원, 수출국영무역 정보 취합·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 - 향후 농업분야 협상의 최우선 과제 예상
일반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정 부속서 2의 일반 서비스 추가 - 농지개량, 토양보전 및 자원관리, 홍수 및 가뭄관리, 농촌고용, 소유권 발급, 농민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일반서비스 항목의 명확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a). 보도자료(2013. 12. 8.) 재구성.

제 3 장

농업분야 발리패키지 주요 내용

1. TRQ 관리 개선

1.1. 발리패키지 합의 내용

- UR 타결 당시 TRQ 물량만 확정하고, 관리방식은 개별 회원국의 자율에 맡김에 따라, 국별로 다양한 관리방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수입국 시장접근이 제한되고, 이는 낮은 TRQ 소진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DDA 농업협상에서는 TRQ 관리에 관한 엄격한 규율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 수출국들은 독점적 수입국영무역, 생산자단체에 의한 관리, 품목군 내 특정 세번에만 물량 배정, 최종용도 제한, 국내산 구매조건 연계 등의 부가조건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수입국들은 과도하게 TRQ 관리방식을 제약하는 것은 반대하되, 예측가능성, 투명성, 공정성, 무차별성 강화에 국한하는 신축적인

TRQ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초기 협상을 통해 도출된 기본골격 합의문(2004. 8.)은 TRQ에 의한 시장접근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TRQ 관리방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TRQ 관리방식 개선을 최종적으로 균형 잡힌 협상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신축성을 부여할 기타요소로 지정하였다.
 - 이후 거듭된 모델리티 협상을 통해 UR 수입허가절차(ILP)협정을 준용하되, 쿼터미소진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내용을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Rev. 4)에 반영하였으나, DDA 협상 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TRQ 관리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있었다.

- 그러나 브라질이 OECD 통상장관회의(2012. 5. 24.) 시 ‘TRQ 관리 개선’을 WTO 9차 각료회의 조기수확 후보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이후 브라질은 ‘TRQ 관리 개선’을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Rev. 4)에서 발췌하여 농산물수출개도국모임인 G20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2012. 9. 28.).
 - 이 제안서는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의 내용(본문과 부속서)을 모두 포함하고, 한 가지 조항(농업위원회가 동 제안에 따라 설정된 회원국의 TRQ 관리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감시해야 한다)을 추가한 것이다.
 - G20의 TRQ 관리 제안은 기 제시된 농업분야 모델리티 4차 수정안과 사실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초 이를 두고 주요국 간 별다른 입장 대립이 없었다.
 - 다만, G20 내부 논의과정에서 TRQ 소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은 동 제안과 관련해 난감한 입장에 처해졌으며 유보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 따라서 ‘TRQ 관리 개선’ 이슈가 발리 각료회의에서 큰 어려움 없이 조기수확 성과물의 하나가 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대세를 이루었다.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에 의해서 ‘TRQ 관리 개선’ 이슈에 포함된 개도국 특별대우(S&D) 조항이 논란의 대상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 개도국 우대의 핵심은 TRQ 관리방식의 변경을 요구받을 경우 선진국과 달리 기존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거나 제시되어 있는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허가 방식 이외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후 농업협상그룹회의에서 다루어진 ‘TRQ 관리 개선’ 관련 핵심쟁점은 4차 수정안(Rev. 4)의 개도국 특별대우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 미국은 모든 개도국이 TRQ 미소진 메커니즘의 적용을 면제받는 현행 특별대우 방식보다는 수혜대상 개도국을 열거하는 방식(Rev. 3)과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일본과 EU가 미국의 주장을 지지한 반면, TRQ 의무가 있는 개도국인 중국, 브라질 등의 G20, 우리나라 등은 현행 개도국 특별대우의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 특히, 우리나라는 농산물 순수입국으로서 TRQ 관리방안은 국내적 민감성이 있으며, DDA 협상의 균형 관점에서 동 제안이 논의되어야 하고, 오랜 협상의 결과 안정화된 이슈이므로, 개도국 우대조항은 현행 4차 수정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¹
- TRQ 관리 개선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주장과 개도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다가 2013년 11월 20일 사무총장 주관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안서가 확

¹ 이 제안에 대해 G10 내부의 입장은 단일하게 모아지지 않았다. 일본은 시장접근 확대가 민감하다는 이유로 TRQ 관리 개선 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미국 견해 지지)을 표명한 반면,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G20의 TRQ 제안에 대해 민감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정되었다. 여기에는 제12차 각료회의(2019)에서 미소진 메커니즘(개도국 S&D 포함)을 재검토하되, 이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부속서 B에 등재되고(미국, 베네이도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5개국), 미소진 메커니즘 적용을 유보한 국가를 제외한 국가들은 계속 기존의 미소진 메커니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이 포함되었다.²

- 미국은 제12차 각료회의를 통해 개도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된 현재의 미소진 메커니즘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미소진 메커니즘의 적용을 유보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중국을 위시한 개도국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러한 절충안이 마련된 것은 개도국 우대에 대한 입장대립으로 인하여 사실상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TRQ 관리 제안 전체를 없던 일로 돌리기에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1.2. TRQ 관리 개선의 파급영향

- 2012년 말 현재 TRQ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49개국으로 TRQ 소진율이 높은 국가는 브라질(100%), 호주(97%), 스위스(92%), 캐나다(85%) 등이며, 선진국들 가운데 미국(55%), EU(48%), 일본(65%), 노르웨이(58%) 등은 소진율이 낮은 편이다(표 3-1 참조).
 - 개도국은 TRQ 관리 강화에 대해 특별대우를 인정받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부담이 적다. 중국과 우리나라, 대만은 모두 TRQ 소진율이 61% 수준이다. 한편, 태국과 칠레는 TRQ 소진률이 4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² G20 제안서에 13~15조와 부속서 B가 신설되었다.

표 3-1. TRQ 관리방식별 국가별 TRQ 소진율(2002~11년 평균)

단위: %

	실행 관세 ¹⁾ (AT)	선착순 ²⁾ (FC)	수입 허가 ³⁾ (LD)	경매 ⁴⁾ (AU)	과거 실적 ⁵⁾ (HI)	국영 기업 ⁶⁾ (ST)	생산자 단체 ⁷⁾ (PG)	기 타 (OT)	혼합 방식 (MX)	불특정 (NS)	총 계
호주	98	-	-	-	96	-	-	-	-	-	97
브라질	100	-	-	-	-	-	-	-	-	-	100
캐나다	-	66	70	-	78	100	-	100	98	-	85
칠레	-	45	-	-	-	-	-	-	-	-	45
중국	-	-	87	-	-	-	-	-	35	-	61
EU	-	65	51	-	68	-	-	-	-	-	48
일본	-	-	57	95	-	98	-	-	8	-	65
한국	46	-	42	42	83	93	41	-	81	-	61
노르웨이	78	-	22	46	93	-	-	-	-	-	58
스위스	83	-	83	95	100	-	-	-	97	-	92
대만	-	-	87	43	-	-	-	-	72	-	61
태국	100	-	34	-	-	22	77	-	-	-	45
미국	-	47	-	-	-	-	-	-	73	47	55
전체평균	68	43	59	59	57	70	63	100	65	47	

주 1) 실행세율(applied tariff)에 의한 TRQ 관리는 실제 수입량이 설정된 TRQ 물량을 초과해도 쿼터 내 관세만 적용하는 TRQ 관리방식이다. 따라서 사실상 단일의 쿼터 내 관세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필요 시에 높은 쿼터 밖 세율을 적용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소진되었어도 TRQ 관리에 대해 수출국들이 이의제기할 여지는 없다.

2) 선착순 배정(First-come, first-served)은 수입 통관 순서에 따라, 설정된 TRQ 물량까지는 낮은 쿼터 내 관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서는 쿼터 밖 관세가 적용되는 TRQ 관리방식이다. 통관 및 관세평가 절차가 정비된 체제를 갖춘 경우에는 수입관리의 간편성과 무역거래의 투명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해당 품목의 수입수요가 설정된 TRQ 물량보다 클 경우),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평가된다.

3) 수입허가제도(Licences on demand)는 해당 품목의 수입 시 상대적으로 낮은 쿼터 내 관세가 적용되는 TRQ 물량의 수입권한을 적절히 배분하는 관리방식이다. 해당 품목의 수입수요가 설정된 TRQ보다 작을 경우 대부분 선착순에 의해 수입권을 배정하고 있으나, 수입수요가 설정된 TRQ보다 클 경우에는 수입권 신청자가 요청한 수입물량을 비례적으로 감소시켜 TRQ에 일치시키기도 한다. 수입허가제는 다른 TRQ 관리방식에 비해 수입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입허가권 발급을 통한 정부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공정 경쟁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수입권 확보 시 예상되는 수입차익이 클 경우 이를 획득하기

위한 비효율 거래활동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 4) 과거 수입실적에 따른 배분(Historical importer)은 TRQ에 대한 수입권을 과거 교역 실적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수입업자 혹은 수출국에 할당하는 관리방식이다. 단기적으로 수출입국(업자) 간 안정적인 거래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수출국(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여 시장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 5) 경매(Auction)는 경쟁입찰에 의해 TRQ 수입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론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TRQ 관리로 간주된다. TRQ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렌트를 정부가 회수할 수 있다는 점과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에 기초하여 TRQ 수입이 이루어짐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수입업자가 TRQ 물량을 배당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비생산적 이윤추구행동에 의해 거래비용이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 6) 국영무역(State trading enterprises)방식은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한을 갖는 국영무역기업을 통해 TRQ 수입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수입물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가격안정과 수입차액 회수를 통해 재원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수출국으로부터 국영무역기업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부족, 생산자 보호, 비상업적(정치·외교적) 고려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7) 생산자단체(Producer group)에 의한 TRQ 운영은 TRQ 수입권이 해당 품목과 관련된 생산자, 가공업자, 혹은 유통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에 부여된 경우이다. 시장개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룹에 대한 보상이라는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생산자단체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수입량과 수입품종, 수입시기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시장접근기회의 보장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자료: 서진교 외(2013) 재인용. WTO(2012) TN/AG/S/26 Rev. 1,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 2002-2011에서 평균을 구함.

○ 우리나라의 TRQ 품목은 총 63개(HS10 세번 203개)이며, 쿼터소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65% 미만인 품목은 24개 품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2 참조).

- 이중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허가 이외의 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는 품목은 대추, 인삼, 잣(수입권공매) 세 가지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품목에서 채택하고 있는 ‘실수요자 배정-신청 선착순 방식’은 TRQ 수입권을 수입당사자에게 배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선착순 방식(관세당국에 신고만 하면 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비조건적 허가방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2. 우리나라의 TRQ 관리방식별 소진율(2008~2012년 평균)

		90% 초과~100%	65~90%	30~65%	1~30%	0%
국영무역 (2)		쌀, 참깨				
수입권공매 (4)			밤, 생강	대추	인삼	
실수요자 배정 (46)	실적기준 배정 (15)	고구마전분, 매니옥전분, 변성전분, 매니옥, 맥아, 옥수수, 보조사료, 버터, 유당, 종계	종돈, 보리, 맥주맥, 에틸알콜, 기타가공곡물			
	신청 선착순 (31)	호밀, 밀 전분, 감자분, 옥수수(종자), 사료용 근채류	녹차, 탈지분유, 기타 서류	유장, 진지분유, 인조꿀, 수수, 배합사료, 매니옥펠리트	연유, 육분, 귀리, 생사, 참깨유박	종유, 조란, 감자(종자), 꿀분, 잠종, 누에고치 묘목류, 뽕나무, 고구마, 조, 오렌지, 감귤류
국영무역+수입권공매 (4)		메밀, 땅콩	마늘, 양파			
국영무역+실수요자배정 (2)		녹두/팥, 대두				
국영무역+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1)		고추				
수입권공매+실수요자 배정 (4)		천연꿀, 감자	참기름			잣

자료: 서진교 외(2013) 재인용, 관세무역개발원 수입통계에서 재계산.

- 우리나라는 TRQ 관리가 합의됨에 따라, TRQ 정보 공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축산물 수입관리 관련 고시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대부분 현재 규정상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 또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 3년 연속 소진율이 65% 미만이 되더라도 TRQ 관리방식 변경의무가 없어 국내 파급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그러나 제12차 각료회의(2019)에서 미소진 메커니즘(개도국 우대조치 포함)을 재검토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여 TRQ 관리방식을 선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이는 개도국 지위의 유지 여부가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관건인 점을 고려하여, 선착순이나 비조건적 허가 방식으로 사전에 전환하거나 여타 방식을 채택한 TRQ 품목의 소진율을 높여서 농산물 수출국들의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서이다.
- 가령, 호밀, 귀리, 옥수수, 수수 등의 종자용 곡물, 묘목류, 뽕나무 등 산식물, 그리고 종축(종우, 종돈, 종계) 등은 TRQ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착순 품목으로 전환해도 수입량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며, 잠종, 누에고치, 생사 등 국내 생산량이 미미하고, 대체 가능성도 낮은 품목도 TRQ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실행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TRQ 내외 관세가 동일한 오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 한편, 소진율이 낮은 품목의 경우 선착순 제도하에서 자격조건을 보다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전지분유, 탈지분유, 연유, 매니옥펠리트 등 현행 실수요자용 제한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수입권 공매의 주체가 해당 상품의 생산자단체일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밤, 잣, 대추 양파, 마늘 등의 품목은 보다 효율적인 수입권 공매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실제 자격제한이 없으면서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품목은 차제에 WTO에 선착순 방식임을 정확히 통보함으로써 TRQ 소진율 변경과 무관하다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표 3-3. 우리나라 미소진 메커니즘 적용 가능 품목(2013년 12월 현재)

품목명	물량(톤)	세율(%)	연도별 이행률(%)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종우(두)	1,067	-/89.1	0	0	0	0	0	0	검역조치(광우병)로 수요 없음
탈지분유	1,034	20/176	2	64	82	100	100	70	국제가 상승, 재고증가(08)
전지분유	573	40/176	0	21	7	100	100	46	구제역으로 인해 수입증가(11)
연유	130	40/89	0	0	0	100	0	20	국내 가격 저림, 수요 없음
유장	54,233	20/49.5	58	57	66	48	57	57	
조란	19,515.8	30/41.6	0	0	0	0	0	0	국내 수요 없음
골분	467.6	5/25.6	0	0	0	0	0	0	검역조치(광우병)로 수요 없음
잡종(천상자)	9.5	8/18	0	0	0	0	0	0	국내 수요 없음
묘목류(천주)	145.2	8/18	0	0	0	0	0	0	국내 수요 없음
뽕나무(천주)	1,402.7	8/18	0	0	0	0	0	0	국내 수요 없음
감자(종자용)	1,898	-/304	0	0	0	0	0	0	국내 수요 없음
매니옥펠리트	1,000,000	3/887.4	72	32	25	25	38	38	대체품 수입증가로 수요 감소
고구마 (신선기준)	18,535	20/385	2	1	1	1	1	1	국내 생산 과잉
기타서류	326.7	20/385	88	40	63	80	75	69	
잣(미탈각기준)	52.9	30/566.8	0	0	0	0	0	0	중국산 냉동잣 저가수입 증가
감귤류	2,097	50/144	0	0	0	0	0	0	오렌지 수입증가 국내 생산 과잉
대추(건조기준)	259.5	50/611.5	71	0	4	27	67	34	국내 생산증가, 가격 약세
조(종자용)	0.4	3/18	0	0	0	0	0	0	국내 수요 없음
인삼	56.8	20/222.8~754.3	100	88	37	0	0	45	국내 생산 증가 중국삼의 가격 상승
참기름과 그 분획물	668.0	40/630	27	41	74	100	93	67	
인조꿀	6	20/243	0	100	0	91	100	58	
육설분	3,210	5/26	14	3	3	0	0	4	검역조치(광우병)로 수요 없음
참깨유박	212	5/63	0	0	0	0	94	19	
기타배합사료	627	4.2/71	42	50	40	31	67	46	국내 수요 감소
누에고치	1,143	2/51	0	0	0	0	0	0	국내 수요 없음
생사	2,254	8/17,215원/kg	27	26	23	20	19	23	국내 수요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 개도국 식량안보 공공비축 허용

2.1. 발리 패키지 합의 내용

- UR 농업협정은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을 허용보조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관리가격에 의한 수매는 시점이 고정된(1986~88년) 외부참조가격(국제가격)과의 차이를 AMS 계산에 산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회원국들이 이러한 정책지원을 허용보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 그러나 UR 협정 당시 AMS가 없는 것으로 통보한 대부분의 개도국은 관리가격으로 식량작물을 수매할 경우 최소허용보조(de-minimis) 한도 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다.
 - 결국 수매제도를 감축대상 보조로 규정한 UR협정은 개도국 입장에서는 농정의 큰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 우리나라도 AMS 제약으로 말미암아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쌀을 시가매입, 시가방출에 의한 공공비축제도로 변경한 바 있다.
- DDA 농업협상에서는 개도국에게 식량안보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비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격으로 수매하는 경우에도 AMS에 산입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아프리카 그룹이 2006년에 처음으로 제안했다.
- 이후 G20 그룹은 허용보조(Green box) 관련 농업 모델리티 협상과정에서 아프리카 그룹의 제안서를 토대로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허용’ 조항을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반영하였다.
 -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Annex B 주석 5)에는 ‘공공비축제 운용에 따른 품목의 구입가격과 외부참조가격의 차이는 AMS로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도국의 경우 저소득, 자원빈곤층을 위한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한 비용은 AMS에 산입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었다.

- 4차 수정안이 배포된 이후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쟁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 그러나 이번 스물패키지 논의가 시작되면서 인도가 2012년 10월에 G33 내부에서 동 이슈를 조기수확 대상으로 제안했다.
- 이어서 2012년 11월 농업협상그룹 회의에서 인도네시아가 G33 국가들을 대표하여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허용보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기수확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제안서를 제출했다.
 - 이는 인도가 자국의 공공비축 운영과정에서 보조한도를 초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총선 등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한 식량안보법 제정과 함께 G33 명의의 제안서 채택을 추진한 결과이다(이주명 2013).
 - G33의 제안서는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했다.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제안에 대해 선진국들은 이를 허용할 경우 재고가 늘어나 수출보조로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가 심하였으나, G33 국가들은 현재의 모델리티에도 관련 규정은 괄호([])가 없기 때문에 안정화된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노르웨이 등은 전체 모델리티에서 G33의 제안을 별도로 떼어내 합의한다면 공공비축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는 규정이 되며, 아직 동 제안은 다자간에 깊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였고, 일부 수출국들은 DDA가 타결되면 농산물 무역이 개혁되어 식량안보는 크게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 이렇듯 개도국 공공비축의 AMS배제 제안에 대해 반대가 많아지자 G33은 공공비축 목적의 식량구매 시 개도국의 AMS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4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 i) 공공비축 관련, 개도국 de-minimis 상향조정(10 → 15%)
 - ii) 공공비축 AMS 산정과 관련한 외부참조가격 기준기간 조정(현재: 1986~1988 → 변경: 최근 3년)
 - iii) Eligible production의 개념 조정(총생산량 → 수매량)
 - iv) 관리가격 산정 시 운송비 등 비용을 제외한 농가수취가격을 반영

- 하지만 이러한 대안에 대한 회원국 간 논의 결과, de-minimis 상향조정이나 고정외부참조가격 변경에는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안으로 관리가격 계산 시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UR협정문 18조 4항을 적용하거나, 항구적 해법 마련 전까지 평화조항(peace clause)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송주호 2013a).

-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이 문제의 합의도출을 위해 수차례 소그룹회의 및 미국과 인도의 양자협의를 등을 추진하였으나 11월 26일 일반이사회까지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 특히, 인도 측과 협의를 통해 평화조항을 2017년까지 적용하되, 동 기간 동안 영구적인 해법을 마련토록 하는 데 잠정합의하였으나, 인도 내각의 반대로 최종 합의가 무산되었다.
 - 이후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발리에서 추가 협의를 추진한 끝에 12월 6일에 이르러서야 극적으로 미국과 인도의 협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최종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국 등 선진국은 평화조항 적용을 일정기간(6개월~4년)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영구적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인도 측 입장을 수용하였다.
 - 한편, 인도는 상기 평화조항으로 농업협정과 보조금 협정 등 모든 규정

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였으나, 미국과 EU 등은 보조금 협정 적용의 배제에는 반대하였으며, 결국 농업협정상의 보조금 한도 초과에 대해서만 분쟁 제기를 자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 또한, 파키스탄의 요구를 반영, ‘다른 회원국들의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 적용 대상 품목 수는 미국 등 선진국이 2개 이내를 주장했고, 인도는 3개 이상을 주장했으나 최종 합의된 결과 전통적 주식으로 하되, 품목 수는 한정 않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적용 대상 비축프로그램으로 미국 등 선진국은 기존 프로그램에 한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인도는 미래 신설되는 비축프로그램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최종 합의는 기존 프로그램에 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이주명 2013).
- 따라서 MC9 각료결정일(2013. 12. 7.)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비축제도가 있고 보조한도를 초과하는 개도국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농업협정 위반에 따른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상기의 잠정적인 조치(Interim Mechanism)가 적용되지만, 엄격한 발동 조건, 보조금 협정 위반 시 제소가 능성 등으로 볼 때, 인도 등 극소수 개도국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번 식량안보 공공비축 합의를 통해 UR 협상에 근거한 현재의 농업보조금 체제에 대한 개도국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반영될 여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합의문에서 인도의 주장은 대폭 수용되었지만, 현재 공공비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G33 회원국들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 특히, 현재는 보조금 한도 문제에 인도만큼 절실하게 직면하지는 않았지만, 중국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농가소득 지지 정책의 확대 등으로 수매가격을 계속 인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보조금 한도 내에서 국내 농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에 다다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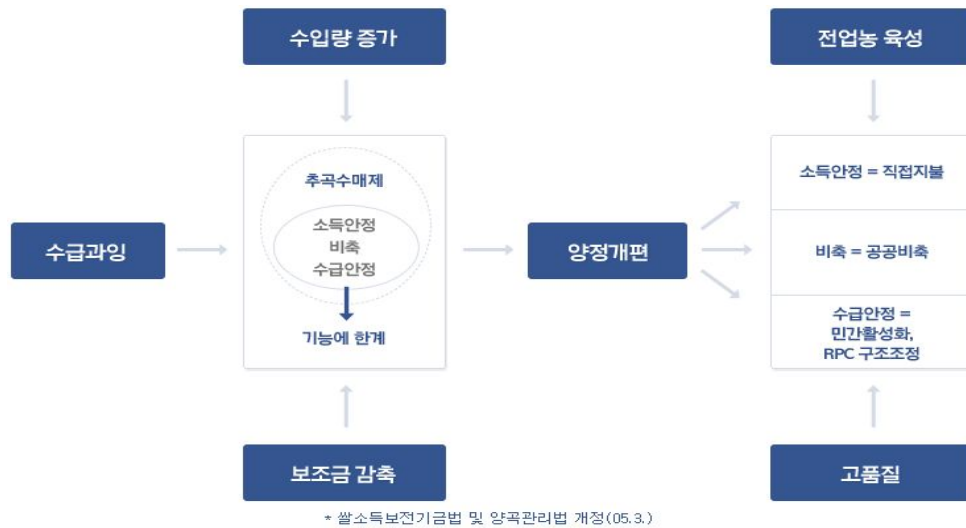
- 한편, 미국은 **Safeguard** 규정에 의거, 보조금 협정을 통해 언제든지 인도 등 상기 결정을 활용하는 국가에 대해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 제11차 각료회의(2017년) 때까지 채택할 영구 해결책(permanent solution)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문에 제시되었듯이 2014년부터는 영구적 해법 마련을 위한 워크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영구적 해법의 개념정의를 없으므로, 동 개념부터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인도는 농업협정 18조 4항에 의한 인플레이션 고려를 영구적 해법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관리가격에 의한 매입을 시장가격에 의한 매입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제안서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작은 것으로 보인다.

2.2. 개도국 식량안보 공공비축의 파급영향

- 우리나라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관리가격에 의한 매입을 시장가격에 의한 매입으로 변경한 바 있다.
 - WTO의 허용보조 요건 충족을 위해 시가 매입·시가 방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FAO 권고 등을 고려하여 비축규모는 연간소비량의 17% 수준(2개월분)으로 설정하고 매년 비축규모의 1/2을 매입·방출하고 있다 ('13 매입물량: 37만 톤).
 - 한편, 2013년에는 공공비축 대상을 쌀에서 쌀, 밀, 콩으로 확대하였다.
 - 2014년산부터는 'ASEAN+3 국가 간 비상 시 쌀비축 약정(APTERR)'의 이행을 위해 10만 톤 수준을 추가적으로 비축할 예정이다.

그림 3-1. 우리나라의 양정개편과 공공비축제의 도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우리나라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쌀에 대해 고정직불금(허용보조)과 변동직불금(감축대상보조)으로 분리하여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 이후 AMS 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상기제도의 활용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해 연도 수확기 산지가격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의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당초 설계대로 목표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매 3년마다 조정되지 않고, 2005년 이래로 목표가격이 정곡 80kg 기준 17만 83원³으로 고정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쌀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AMS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3 이 가격은 2008년부터 5년간 동결되었으며, 2013년산부터는 18만 8,000원으로 인상하여 향후 5년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다(국회 농해수위는 상기 내용을 포함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13. 12. 30.).

표 3-4. 우리나라 AMS 통보내역(2001~2008)

단위: 억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업총생산액	335,683	334,445	330,163	372,886	362,729	363,893	358,372	396,626
AMS 한도	17,209	16,439	15,670	14,900	14,900	14,900	14,900	14,900
감축대상보조 (AMS)	16,316	15,504	14,717	14,584	325	9,740	365	331
품목특정1)	쌀 (15,829) 보리 (475) 유채(10)	쌀 (15,041) 보리 (457) 유채(6)	쌀 (14,255) 보리 (457) 유채(5)	쌀 (13,708) 보리 (396) 콩(473) 유채(7)	보리 (325)	쌀 (9,007) 보리 (282) 콩(450)	보리 (365)	보리 (331)
품목불특정2)	3,959	2,910	4,144	4,371	4,501	3,708	2,347	2,916

주 1) 기타 품목은 보조금 지급액이 품목 생산량의 10% 미만으로 최소허용보조에 해당.

2) 농업총생산액의 10% 미만으로 최소허용보조에 해당.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3-5.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실적(2005~2012)

단위: 억 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변동직불금	29	9,007	4,371	2,791	5,945	7,501	0	0
고정직불금	6,038	7,168	7,120	7,118	6,328	6,223	6,174	6,1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DDA 농업 모델리티의 4차 수정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AMS 운용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에는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2006년의 경우 변동직불금이 9,007억 원⁴에 달해 선진국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AMS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표 3-6 참조).

4 2006년은 수확기 쌀가격이 14만 7,722원(정곡 80kg 기준)으로 하락한 결과, 변동직불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표 3-6. AMS 감축 관련 DDA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Rev. 4)

구 분	선진국	개도국
전체 AMS	감축기준	UR 협정 이행의 최종연도 양허액 (1조 4,900억 원)
	감축수준	45%
	이행기간	이행 첫날 7.5% 감축 나머지는 5년 동안 균등감축
	이행말 지급한도	8,195억 원

자료: 문한필 외(2011).

- 최소허용보조(de-minimis)는 감축대상보조의 성격이나, 지원규모가 작기 때문에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이다. UR 협정에서 품목특정 de-minimis는 품목별 생산액의 5%(개도국은 10%), 품목불특정 DM은 농업총생산액의 5%(개도국은 10%) 이내에서 각각 감축의무가 면제된 바 있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 de-minimis의 허용한도를 감축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 DDA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는 de-minimis 감축률이 50%로, 감축 방식은 이행 첫날에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개도국은 2/3 공식이 적용되어 de-minimis 감축률은 33.3%이며, 3년의 감축 이행기간이 부여되었다(표 3-7 참조).

표 3-7. de-minimis 감축 관련 DDA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Rev. 4)

구 분	선진국	개도국
감축기준	1) UR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 2) UR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	1) UR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 - 해당 품목 생산액의 10% 2) UR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 - 농업총생산액의 10%
감축수준	50%	33.3%
감축방법	이행 첫날에 감축	3년 동안 균등감축

자료: 문한필 외(2011).

- 따라서 개도국 지위가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는 DDA 이행기간의 3년차에 품목불특정(품목특정) de-minimis 상한은 기준기간 농업총생산액(해당 품목

생산액)의 6.7%가 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특정 및 품목불특정 de-minimis의 지급실적이 많지 않아 감축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하지만, UR 이행기간에 일시적으로 de-minimis 수준이 높았던 품목인 쇠고기(1997년 9.3%), 우유 (2002년 9.1%), 마늘(2002년 8.2%) 등에는 새로운 상한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경우에 따라 품목특정 AMS를 활용할 수 있도록 AMS 운영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만약, 선진국 기준이 적용될 경우, de-minimis 상한은 생산액의 2.5%가 되어 많은 품목에서 재정지원 규모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번에 합의된 ‘개도국 식량안보 공공비축’ 제안과 관련한 주요 개도국(특히, 중국)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리패키지에서는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한 평화조항을 영구적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적용하기로 한 만큼, 이 문제에 관한 미국 등 선진국과 인도와 중국을 위시한 개도국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 농업협상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협상진전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도국은 UR 협상에서 AMS 지급실적이 없는 것으로 양허계획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을 위한 수매제도를 de-minimis 한도(농업총생산액의 10%) 이내로 지출해야만 하는 제약을 갖고 있다. 주요 개도국의 WTO 통보내역을 토대로 각국의 쌀에 가격지지 수준을 정리하면 <표 3-8>과 같다.
- 중국은 AMS 한도가 0이므로 de-minimis 이내 수준으로만 감축대상보조를 운용할 수 있으며, 쌀과 밀에 대해 가격지지를 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통보내역인 2008년의 경우 두 품목 모두 외부참조가격보다 낮은 관리가격을 적용한 결과 AMS는 음(-)의 수치를 기록했다.

- 인도네시아는 AMS 한도가 0이며, Green Box 내역만 통보하고, 2008년 까지 쌀에 대한 시장가격지지는 없는 걸로 통보하였다.
- 태국은 AMS 한도가 있지만 쌀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지지를 하지 않고, 기타 품목특정적인 보조(Paddy Pledging Scheme과 Soft Loan Measure)로 2007년에 쌀에 대해 15,054백만 바트의 AMS를 지급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참고로 태국의 AMS 한도는 19,028 백만 바트이다.⁵
- 인도는 AMS 한도가 0이며, 주요 품목(쌀, 밀, 면화, 황마)에 대해 가격지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통보내역인 2004년의 경우 모든 품목에서 관리가격이 외부참조가격보다 낮아 AMS는 음(-)이며, de-minimis로 표기하고 있다.

표 3-8. 주요 개도국의 쌀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관리가격	외부참조 가격	적용 물량 (Eligible Production)	AMS	비고
중국 (2008)	1,520 (위안/t)	2,659	1,854 (1,000 MT)	-2,112 (백만 위안)	de minimis
필리핀 (2010)	26.15 (페소/kg)	4.56 (페소/kg)	326 (1,000 MT)	7,045 (백만 페소)	de minimis (생산액의 3.0%)
인도 (2004)	180 (\$/t)	262.5 (\$/t)	22,830 (1,000 ton)	- 1,884 (백만\$)	de minimis
코스타리카 (2011)	600.25 (\$/t)	223.78 (\$/t)	277,541 (ton)	104,485 (천 \$)	현행 AMS

주: 적용 물량은 구매한 물량을 말함. 필리핀의 2010 쌀 생산액은 231,844 백만 페소임.
 자료: 송주호(2013) 재인용, G/AG/N/CHN/21(2011. 10), G/AG/N/PHL/42(2013. 3.),
 G/AG/N/IND/7(2011. 6.), G/AG/N/CRI/40/Rev.1(2013. 2.).

- 중국은 2004년부터 국가비축 목적의 식량의 수매를 최저수매가격제도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MC9 각료결정일(2013. 12. 7.) 현재 운영되

5 일부 국가들은 태국이 Paddy Pledging Scheme(벼 담보제도)로 시장가격보다 40% 이상 높게 쌀을 구매하고 있으며 쌀 재고가 누적되어 조만간 국제시장에 덤핑 수출될 것이며, 태국은 AMS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있는 공공비축제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 당시 AMS 한도를 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de-minimis 이내 수준으로만 감축대상보조를 운용할 수 있다.⁶
- 중국의 식량에 대한 최저수매가제도는 2004년 식량시장의 자유화조치로 보호가격제도가 폐지된 직후 도입되었으며, 식량의 시장가격이 정부에서 책정한 최저수매가격 이하로 하락 시 정부에서 지정한 국영기업⁷과 위탁수매기업이 최저수매가격으로 식량을 수매하여 비축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식량 최저수매가격 정책⁸은 소요 비용을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 제도의 도입 초기 공공비축 대상 품목은 쌀과 밀⁹이었지만, 중국은 2008년 이후 가격하락 및 판매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수수, 대두, 유채씨 등에 대해서도 임시수매비축을 실시하여 이들 품목의 수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표 3-9 참조).

6 2008년까지 중국이 WTO에 통보한 국내보조 내역을 보면, 쌀과 밀에 대해 가격지지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지정책이 de-minimis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이다.

7 국가비축은 2000년 설립된 국영기업인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中國儲備糧管理總公司)가 <중앙비축식량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는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중앙정부의 식량비축을 책임지는 국영기업으로, 식량과 식용유의 비축, 가공, 무역, 물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전국에 24개 분사가 있다. 한편, 각 성·시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비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과는 무관하다.

8 최저가 수매는 수확기를 중심으로 일정 기간으로 국한된다. 또한 당해 연도의 최저수매가격이 일반적으로 연초에 발표되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도 최저수매가격 정책은 식량 유통에서 시장기능을 제약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9 국가비축 식량수매는 쌀과 밀의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쌀은 조생 장립종, 중·만생 장립종, 중단립종, 밀은 흰 밀, 붉은 밀, 혼합 밀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국가비축 식량수매의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시장가격으로 수매하고 있다.

표 3-9. 중국의 식량최저수매가 및 임시수매비축가격

단위: 위안/kg

품목		대상지역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최저수매가	쌀	조생 장립종 안휘,강서,호북 호남,광서	1.40	1.40	1.40	1.54	1.80	1.86	2.04	2.40	2.64	
		중·만생 장립종 길림,안휘,강서 호북,호남,사천	1.44	1.44	1.44	1.58	1.84	1.94	2.14	2.50	2.70	
		중단립종 흑룡강,요녕,강소 광서,하남	1.50	1.50	1.50	1.64	1.90	2.10	2.56	2.80	3.00	
	밀	흰 밀		1.44	1.44	1.54	1.74	1.80	1.90	2.04	2.24	
		붉은 밀	하남,하북,강소 안휘,산둥,호북	1.38	1.38	1.44	1.66	1.72	1.86	2.04	2.24	
		혼합 밀		1.38	1.38	1.44	1.66	1.72	1.86	2.04	2.24	
임시수매비축	쌀	중·만생 장립종 남부 쌀 주산지				1.88						
		중단립종 동북 쌀 주산지				1.84						
	옥수수	동북 지역				1.50	1.50			2.12	2.24	
	유지	대두	동북 지역				3.70	3.70	3.80		4.60	4.60
		유채씨	유채 주산지				4.40	3.70	3.90			

주 1) 최저수매가와 임시수매비축가격의 등급은 국가표준 3등급이며 각 등급 간 가격차는 kg당 0.04위안

2) 최저수매가 대상지역은 2008년부터 조생 장립종 쌀은 광서, 중만생 장립종과 중단립종 쌀은 요녕, 강소, 광서, 하남지역이 추가됨.

3) 임시수매비축가격의 경우 동북지역은 흑룡강, 요녕, 길림, 내몽고지역을 포함함.

자료: 程國強. 2011. “中國農業政策的支持水平與結構特征.” 「發展研究」. 2011年 第9期.

○ <표 3-9>에 나타나 있듯이 2008년 이후 중국의 식량 최저수매가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및 식량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2012~2013년의 최저수매가격을 보면, 밀은 이미 중국의 외부참조가격(1996~1998년 중국의 해관통계 기준, 쌀의 경우 자포니카와 인디카 품종의 비중이 1:2로 반영된 가중평균가격임)을 초과한 상태이며, 쌀은 외부참조가격에 근접한 것을 알 수 있다.

- 중국은 당분간 이러한 최저수매가격의 인상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한 영구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협상에서 다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 미국 등 선진국들은 중국과 인도의 식량정책과 관련한 경직적인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농업분야 여타 쟁점에서 이들 국가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동 사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수출경쟁

- UR 협상에서는 수출보조금을 선진국은 6년 동안 금액기준 36%, 물량기준 21%를 감축하도록 하였고, 개도국은 10년 동안 금액기준 24%, 물량기준 14%를 감축하도록 하였다.¹⁰
- 이후 DDA 협상에서는 수출보조가 무역왜곡의 대표적인 조치라는 판단하에 20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 선진국은 2013년까지, 개도국은 2016년까지 수출보조를 완전 철폐하도록 합의한 바 있으며, 이 내용은 농업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도 포함되었다.
- 그러나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2013년이 다가오자 회원국들은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진국들이 2013년에 수출보조 철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벌여 왔다.

¹⁰ UR 협상에서 25개국이 품목별 수출보조 한도를 설정하였는데, 그중 선진국은 미국(13개), 호주(5), 뉴질랜드(1), 캐나다(11), 유럽연합(20), 아이슬란드(2), 노르웨이(11), 스위스(5) 등이다.

- 브라질은 수출보조 철폐는 2005년 홍콩 각료회의(MC6)의 위임사항 (mandate)이며, 2013년 수출보조 철폐시한 도래 등으로 MC9에서의 수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호주도 케언즈 그룹¹¹을 대표해 2013년 수출보조 철폐는 회원국들의 약속이므로 문제제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결국, 2013년 5월 21일 브라질이 G20을 대표하여 수출경쟁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였는데, 현행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선진국들만 2013년에 수출보조를 50% 감축하자고 제안하였다.
- 브라질은 이후 미국, EU 등의 반발을 고려하여 개도국에 대해서도 2016년까지 수출보조 25% 감축의무를 6월 14일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 G20(브라질)의 제안에는 수출신용의 상환기일을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의 ‘최대 180일’에서 ‘최대 540일’로 연장하여 수출국의 부담을 다소 완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또한 호주는 수출 경쟁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출신용, 수출 국영무역, 식량원조 관련 정보제공 양식을 제안하였다.¹²
- 그러나 수출신용 이슈에 민감한 미국과 수출보조 감축이 부담이 되는 EU는 수출경쟁분야는 국내보조 및 시장접근과 함께, 농업협상 3대 분야로서 수출 경쟁만의 부분타결을 강력히 반대했다.
- 즉, DDA 이슈들 간의 균형이 중요하며, 단순히 발리 MC9에서의 최대 수확을 목표로 농업분야에서 과도한 성과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11 케언즈 그룹은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 그룹이다.

12 중국이 수출국영무역 정보 제공에 반대함으로써 호주 제안의 일부가 수정된 채 합의되었다.

- 또한 미국과 EU는 DDA 협상은 포괄적 타결이 전제조건이므로, DDA 타결 없이는 2013년 시한은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 이에 반해 아르헨티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성과를 요구하면서 각료회의 폐막 직전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나, 각료회의 폐막 직전에 합의하면서 수출경쟁 이슈는 2008년 DDA 타결 실패 이후 처음으로 수출보조 철폐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 제시되었다.

표 3-10. 수출경쟁 관련 DDA 모델리티 4차 수정안과 G20 제안, MC9 각료선언문 비교

구분	모델리티 4차 수정안	G20 제안 (5. 21./6. 14.)	MC9 각료선언문
수출 보조	- 2013년 선진국 완전 철폐(개도국 2016년 철폐)	- 2013년내 선진국만 50% 철폐 - 2016년까지 개도국 수출보조 25% 감축(당초 개도국 철폐의무 제외에서 수정) - 면화 수출보조는 홍콩각료 선언대로 2013년까지 철폐	- 2005 홍콩각료선언의 수출보조 철폐 등 개혁의 중요성 재확인 - 농업 모델리티(Rev. 4)가 향후 논의의 주요 기초 중 하나임을 확인 -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등 조치의 감축기조 및 감축 약속 이하 수준 유지
	- 농업협정 9.4조(개도국 수출물류비 등)에 따른 지원은 5년 후인 2021년 철폐	- 수출보조 전면 철폐 5년 후 철폐(수출보조 전면 철폐시한이 명시되지 않아서 사실상 철폐시한 없음)	- 수출경쟁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농업위원회에서 매년 집중 논의
수출 신용	- 상환기간 최대 180일 (개도국은 360일로 시작, 4년차 180일로 조정)	- 540일 (개도국 1,080일, 3년 내 540일로 조정)	- 사무국이 회원국의 수출신용, 식량지원, 수출 국영 무역 정보를 취합, 제공

주: 수출국영무역 및 식량원조는 G20 제안 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송주호(2013a) 재구성.

- 수출경쟁 분야 합의내용은 홍콩각료선언(2005)에서 약속한 수출보조 철폐 및 수출신용 축소, 수출국영무역 규율 강화 등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¹³ 농업위원회에서 매년 수출경쟁 조치의 진전 상황을 점검한다는 것이며, 상기 점검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위해 농업협정상 통보의무가 있는 수출보조 외에 사무국이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에 요구할 질문서 양식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 결국, 이번 발리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들은 수출경쟁 제안을 통해 TRQ 관리의 개도국 우대조항에 대한 미국과 EU의 압박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이다(이주명 2013).
- 우리나라는 UR 협정에 따른 수출보조 감축의무가 없고, 수출신용 등도 활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번 정치적 선언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우리나라도 농업협정 9조 4항에 의거해 개도국 수출물류비를 활용하고 있다.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을 기준으로, 개도국은 수출물류비 지원을 2021년까지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40억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는 물류비 지원을 서둘러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에 제도적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수출물류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수출 농산물의 품질 향상, 신규시장 개척, 공동마케팅 추진 등의 간접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대체 지원방안으로써 항공사·해운업체 간의 교섭을 통한 운임료 할인, 수출물류기지 설치와 공동 이용방안 등 농식품 수출 물류인프라 구축을 통한 비용절감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13 구체적으로 수출보조 등의 감축기조 유지 및 수출보조 등의 감축약속 이하 수준 유지 등을 촉구하였다.

표 3-11.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세부항목별 예산집행 실적 추이

단위: 백만 원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 해외시장개척사업	84	127	127	133	176	233	276	298	314
• 농식품 수출기반조성1)	11	19	26	18	22	34	41	42	18
• 수출성장동력 확충2)	5	6	14	8	23	38	47	34	73
• 해외마케팅 사업3)	69	102	86	107	131	161	188	223	223
2.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191	289	288	286	327	413	415	395	410
• 수출물류비 지원	191	263	268	280	316	397	394	355	311
• 수출인프라 강화	-	26	20	6	11	15	22	40	99
계	275	416	415	420	503	646	691	693	724

주 1) 수출선도조직 육성, 수출전문인력 육성, 수출컨설팅, 수출안전성 관리(GAP), 해외 시장정보 인프라 구축, 국내 수출의욕 고취,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2) 식재료 수출활성화, 수출유망품목 육성, 포장디자인 개발, 공동브랜드 관리운영, 품목별 공동마케팅 지원, 신규시장 개척 지원, 지리적표시특산물 수출활성화, 해외물류기반 구축

3) 국제박람회참가 지원, 유통업체 및 지자체 연계 판촉행사, 해외상설매장 설치·운영, 바이어 거래알선, 해외홍보 마케팅, 수출여건변화 대응 마케팅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4. 일반서비스 확대

- 이번 발리패키지에는 WTO 농업협정 부속서2의 허용보조 항목을 일부 추가하는 각료결정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일반서비스 항목에서 불명확했던 홍수 통제 및 가뭄관리, 토양보존 등 관련 항목들이 허용보조로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게 되었다.
- 즉, 농촌개발과 빈곤경감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개혁 및 농촌생계안보(Land Reform and Rural Livelihood security)’ 관련 다음의 6개 항목이 신설되어 일반서비스에 포함되었다.

- ① 농지 개량, ② 토양 보전 및 자원관리, ③ 홍수 통제 및 가뭄관리, ④ 농촌고용, ⑤ 소유권 발급, ⑥ 농민 정착
- WTO 농업협정 부속서2의 일반서비스 항목들은 예시적인 목록이므로, 홍수 통제 및 가뭄관리 등 신설 항목들도 기존 항목으로 지원이 가능했으나, 금번 신설을 통해 허용보조로서 명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기존 일반서비스 세분류: i) 연구사업, ii) 병충해 방제, iii) 교육 훈련, iv) 지도 및 자문, v) 검사, vi) 유통 및 판매 촉진, vii) 하부구조 지원
- 2006년에 아프리카 그룹이 일반서비스 신설을 통한 허용보조 확대를 제안한 바 있으며, 2008년에 G20 그룹이 농업협상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 이후 스톨패키지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G33이 식량안보 제안의 일부로 농업협상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서 발췌하여 조기수확 이슈로 제안하였다 (2012. 11. 16.).
- 이 제안에 대해 미국, 호주, EU 등은 홍수통제 및 가뭄관리 등은 모든 국가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선진국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 한편, 호주는 일반서비스 확대 항목 중 영양 측면의 식량안보(nutritional food security)와 하부구조 서비스(infrastructural services)의 명확화를 요구하였으나 G33 측이 삭제를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서는 제외되었다.
- 우리나라는 기존 일반서비스 세분류나 다른 허용보조 항목들의 해석을 통해 상기의 6가지 사항을 이미 허용보조로 통보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영향은 없다. 아울러 귀농·귀촌 지원, 4대강 홍수관리 등의 신규 투융자사업이 이번에 신설된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12 우리나라 허용보조 통보내역(2001~2008)

	2004	2005	2006	2007	2008
허용보조	48,368	52,198	48,276	45,863	46,732
정부 일반서비스	27,539	23,993	21,887	21,962	21,084
공공비축	1,620	1,698	1,436	1,638	1,371
국내식량구호	147	161	238	252	252
고정직불 등	9,896	9,968	10,157	10,137	9,078
자연재해구호	2,011	10,510	6,026	2,085	3,201
탈농지원	956	751	812	678	131
구조조정 지원	5,010	3,986	5,626	6,764	8,107
환경보전 지원	853	990	1,624	1,905	3,064
조건불리직불 등	336	141	470	442	44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제 4 장

무역원활화 주요 내용

1. 무역원활화 협상 타결

-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에서는 일부 농업이슈 및 개발의제와 함께 발리패키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원활화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 국제교역에서 상품의 통관절차를 개선할 목적으로 제기된 ‘무역원활화’ 이슈는 다른 의제에 비해 다소 늦은 2004년에서야 DDA 협상의 정식의제로 채택되었다.
 - 이후 2009년부터 회원국들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통합협정문 작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다가 2011년 제8차 각료회의 시 조기수확 대상의 한 분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3년부터는 Friends of Chair(FoC)가 설정되어 세부사안별 협상이 빠르게 진전될 수 있었다(서진교 외 2014).¹⁴

¹⁴ 2009년 12월에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안이 만들어졌고 이후 문안 정리(clean text)

- 동 협정문은 WTO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부속서 1A)에 편입되며, 2015년 7월 말까지 전체 회원국의 2/3가 동 협정을 수락하면 수락한 회원국에 대해 발효된다.
- 이번에 WTO 각료 결정(Ministerial Decision)으로 채택된 무역원활화 협정문은 세관절차 관련 GATT 규정의 명확화, 세관 간 정보교환을 포함한 세관 협력 강화,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조치 이행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에 논의되어 온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안은 그동안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크게 제1절과 제2절로 구분된다. 제1절은 GATT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명확화와 개선에 관한 논의이며, 제2절은 제1절에서 합의된 무역원활화 조치를 이행시기와 지원여부에 따라 A, B, C의 의무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¹⁵ 이외에도 A/B/C 의무의 통보 시점, B/C 의무의 이행 연장을 위한 조기경보체제 도입, A의무의 WTO 분쟁 해결절차 적용의 유예기간, 지원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번에 발리에서 채택된 협정문은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 온 통합협정문안 중에서 회원국 간 합의에 도달한 GATT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명확화와 개선에 관한 부분(1절의 대부분)만을 발췌한 것이다.¹⁶

를 위한 협상이 계속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이슈별로 조정자(facilitator) 주도의 회의방식이 도입되어 2년간 850여 개의 미결정 사항을 650개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다(Washington Trade Daily, 2013. 3. 12). FoC는 주요국 간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나 도출된 합의사항이 실제로 협정문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다.

- 15 A의무는 협정 발효 이후, 즉시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한 경과기간이 지나서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C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한 경과기간 및 지원이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
- 16 통합협정문의 제1절에 해당되지만 이번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항은 제13조와 제14조, 제15조이다. 제13조(기관협정)는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립, 의장선출, 산하기관 설립, 협정 이행검토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14조(국가 무역원활화위원회)

표 4-1 제9차 WTO 각료회의(MC9) 무역원활화 협정문 구조

분류	조항	주요 내용
GATT 제10조 (무역규정 공표· 시행) 관련 규정	제1조 정보의 공표 및 이용	수출입 절차 및 요건서류 등 정보의 공표, 인터넷을 통한 공표, 질의처 설치
	제2조 사전공표 및 협의	법령 발효 전 공표, 법령 제·개정 시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제3조 사전관정	물품 수입 전 서면 요청 시 품목분류·원산지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답변 제공
	제4조 불복절차	세관 결정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불복 신청권 보장
	제5조 공정성, 비차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타조치	통제·검역 강화 통보에 관한 원칙, 통관 보류 시 통보, 1차 테스트 기회 부여
GATT 제8조 (수출입 수수료 절차) 관련 규정	제6조 수출입 관련 요금 및 수수료	수출입 관련 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원칙, 관세법 등 위반 시 패널티 부과
	제7조 물품의 반출 및 통관	도착 전 처리, 전자적 납부, 반출 및 제세 분리, 위험 관리, 통관 후 심사, 물품 평균 반출시간의 측정 및 공표, 인가된 영업자, 특송화물, 부패성 상품
	제8조 국경기관 간 협력	수출입 관련 국경기관 간 협력, 인접 회원국 국경기관 간 협력
	제9조 세관통제하의 수입 물품 이동	세관 통제 하에 수입물품이 수입항으로부터 통관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장
	제10조 수출입 및 통과 관련 절차	절차·서류요건의 주기적 검토 및 간소화, 사본의 수용, 국제표준의 사용, 단일서류접수창구, 선적 전 검사의 폐지, 세관브로커 사용 금지, 국경 절차의 통일, 통관 관련 형식 및 서류 요건의 통일, 통관 거부된 물품의 반환, 일시 수입 및 역내외 가공
GATT 제5조 (통과의 자유) 관련 규정	제11조 통과의 자유	서비스에 상응하는 수수료·요금부과, 물품 식별 및 요건 충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절차·요건서류 요구, 담보는 요건충족을 보장하는 한도로 제한
신규 도입	제12조 세관협력	수출입신고에 의심이 있는 경우 세관 간 정보 교류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2013. 12. 12.).

는 국가별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고, 제15조(서문/수평적 이슈)는 여타 WTO 협정과 관계, 분쟁해결, 이행 스케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무역원활화 관련 잔존 쟁점들인 상기 조항들을 최종 협상단계에서 삭제됨으로써 다소 불완전하지만 소기의 성과(협정문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 OECD(2014. 2.)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역원활화지표(TFIs)¹⁷를 활용하여 이번에 발리에서 타결된 무역원활화 합의가 WTO 회원국들의 무역비용(trade cost)을 어느 정도 감축시키게 되는지를 계측하였다.
 - OECD는 이미 2013년에 106개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이들 지표를 가지고, 당시 논의되고 있던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안이 타결될 경우 소득 및 지리적 국가그룹별로 그리고 상품분야별로 무역비용이 얼마나 감축되는지를 중력모형을 통해 계측한 바 있다(Moisé and Sorescu 2013).
 - 전체 무역원활화지표(TFIs) 중에서 이번 발리 합의문에 포함된 조항에 해당하는 세부지표만을 동일한 분석모형에 적용하여 무역비용의 감축 수준을 새로이 추정하였다. 단, a) WTO 회원국들은 이번에 합의된 사항에 속한 모든 옵션들을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와 b) WTO 회원국들은 자유재량권이 주어진 조항은 제외하고 강제적인 조항들만 이행할 것이라는 제한된 시나리오를 별도로 설정하여 파급영향을 계측하였다.
 - 소득수준별로 세 가지 국가그룹으로 나누어 파급효과를 계측한 결과, 완전 이행 시나리오(a)의 경우, 무역비용 감소수준은 저소득국가들이 14.1%, 중저소득국가들이 15.1%, 중상소득국가들이 12.9%로 추정된다.¹⁸ 반면, 제한된 이행 시나리오(b)의 경우, 상기의 국가그룹별 무역비용 감소수준은 각각 11.7%, 12.6%, 12.1%로 계측되었다.
 - 완전 이행 시나리오(a)의 경우, 저소득 국가들의 무역비용 감소(14.1%)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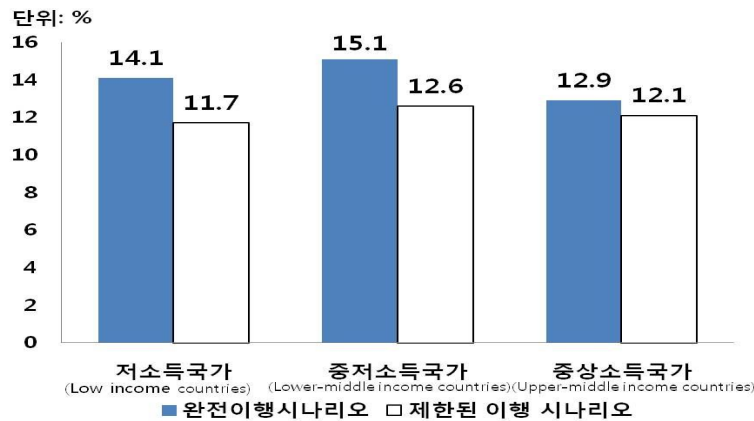
17 OECD는 WTO/DDA 협상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무역원활화 조치들의 상대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나아가 개별 국가의 특정 무역원활화에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일련의 무역원활화 지표(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FIs)를 개발하였다(Moisé and Sorescu 2013). OECD가 개발한 무역원활화 지표들은 WTO가 제시한 조항들을 반영하여 정보 이용가능성, 사전 심사와 항소에서 문서 형식, 시간 지연, 통관 자동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그리고 통과무역 등에 관한 16개 지표들(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수집하고 관련 기관이 확인한 97개의 변수를 통해 계측)로 구성되어 있다.

18 통합협정문안이 타결될 경우를 가정한 Moisé and Sorescu(2013)의 추정결과는 세 가지 국가그룹별로 각각 14.5%, 15.5%, 13.2%였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부지표는 ‘서류 간소화’, ‘통관 자동화’, ‘정보의 접근성’이었으며, 이들 조항의 이행으로 얻게 되는 무역비용 감소분은 각각 3%, 2.4%, 1.7%였다.¹⁹

- 제한된 이행 시나리오(b)의 경우, 저소득 국가들의 무역비용 감소(11.7%)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부지표는 ‘서류 간소화’, ‘통관 자동화’, ‘정보의 접근성’으로 동일했지만, 이들 조항의 이행으로 얻게 되는 무역비용 감소분은 완전 이행 시보다 줄어들었다(각각 2.5%, 1.7%, 1.37%).²⁰

그림 4-1. 무역원활화 타결의 경제적 효과(소득그룹별 무역비용 감소)



자료: WTO(www.wto.org).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Potential Impact on Trade Costs(Feb, 2014).

19 완전 이행 시나리오(a)에서 저중소득 국가들은 ‘서류 간소화’, ‘절차 단순화’, ‘통관 자동화’의 교역비용 감소효과가 높았으며(각각 2.7%, 2.3%, 2.1%), 고중소득 국가들은 ‘절차 단순화’, ‘통관 자동화’, ‘사전 판정’의 교역비용 감소효과가 높았다(각각 2.8%, 2.3%, 1.3%).

20 제한된 이행 시나리오(b)에서 저중소득 국가들은 ‘서류 간소화’, ‘절차 단순화’, ‘통관 자동화’의 교역비용 감소효과가 높았으며(각각 2.4%, 2.1%, 1.5%), 고중소득 국가들은 ‘절차 단순화’, ‘통관 자동화’, ‘사전 판정’의 교역비용 감소효과가 높았다(각각 2.4%, 1.9%, 1.2%).

2. 무역원활화 협상과 농업분야 파급영향

- 국제시장에서 각국의 식품기업들은 점점 더 공급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소비자들은 계절적 제품의 연중 공급을 포함하여 더 많은 식품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식품 무역에서도 중간재 교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따라서 농식품 교역에서도 식품안전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제품이 국경을 통과하게 하는 무역원활화 조치들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 농식품의 무역 거래비용은 공산품에 비해 더 높다. 이는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엄격한 국경 절차, 물리적 검사 및 SPS 요구사항, 그리고 배송 지연에 민감하고 부패하기 쉬운 특성에 기인한다.
 - 수출입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통관지연은 재고보유, 적시생산, 부패가능성 등 상품의 품질 혹은 가치의 악화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추가적인 교역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무역시간은 부패의 위험 때문에 신선 농산물과 화훼, 육류 및 유제품과 같이 시간에 더 민감한 상품의 경우에 특별히 중요할 수 있다.
 - 한편, 공산품보다 상대적으로 더 간단한 국제시장의 공급체인으로 인해, 농축산물의 운송비용이 더 낮을 수도 있지만, 중량 대비 가격이 낮아서 농축산물 가격에서 운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효율화는 개별기업이 국제적인 농식품 가치사슬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²¹

21 실제로 OECD and WTO(2013)는 개발도상국의 농식품 공급자의 56%가 운송비용을 국제공급체인(value chain)에 연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으로 여기며, 회사들의 약 1/4은 부적절한 해상운송을 가장 큰 장벽으로 인식한다고 조사한 바 있다. 반면, 응답자의 10% 이하만이 부적절한 공항능력 혹은 항공연결을 장벽으로 간주한다고 응답하였다.

- 많은 신선 농축산물이 쉽게 부패하고 온도에 민감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적절한 냉장운송 관련 인프라도 중요하다. OECD and WTO(2013)의 조사에서도 냉장과 저온유통 관리가 개도국 농식품 무역회사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들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른 세관절차나 규정 및 행정요건 등도 무역 마찰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은 국경에서의 시간지연과 연결된 간접비용뿐만 아니라 정보와 문서의 제공과 검사 및 허가 절차 준수의 측면에서 상당한 직접비용을 수반하고 있다.
- 공산품에 비해 농식품은 흔히 위생 및 식물위생 증서, 수출쿼터 허가, 검역 조치 등의 추가적인 문서와 검사 및 통제와 같은 더 복잡한 국경절차에 직면하게 된다.²² OECD and WTO(2013)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 농식품을 수출하는 무역회사들의 거의 60%가 세관지연을 가장 큰 무역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다. 또한 개도국 민간 공급자들의 30% 이상이 세관 문서와 지연을 국제 농식품 가치사슬과 연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농식품을 취급하고 통과시키기 위한 세관과 국경서비스의 능력/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무역원활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하다.²³

22 공산품과 달리 농식품은, 위생 및 식물위생(SPS) 기준과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특정 독성 혹은 살충제의 최대잔류수준 등의 특정한 기준으로 인해 무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GATT의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약(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협약(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하에서, 해당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수반하는 기술적 요건, 제한 및 자발적 기준과 절차뿐만 아니라 인간, 동물 및 식물 건강에 관련된 건강 보호 조치와 규정을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23 Nicita and Gourdon(2013)는 식품 관련 제품의 60% 이상의 무역이 적어도 한 가지 형태의 SPS 조치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무역에 대한 SPS의 영향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다. Crivelli and Gröschl(2012)은 WTO/SPS 및 WTO/TBT 기준의 준수나 강화가 수출국의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해 농축산물 무역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정

- 한편, 여러 교역국 간 기준(standard)과 규정(regulation)의 조화는 무역절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시장 간 상품의 이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 UNESCAP(2011)은 식품 기준을 조화롭게 하는 것은 지역 및 국제적 통합을 깊게 하고 무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조화를 이룬 기준은 여러 다른 규정과 관련된 준수비용을 감소시키고 더 나은 정보와 증가된 소비자 신뢰를 통해 해당 기준의 무역촉진 효과를 강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
- 발리에서 합의된 무역원활화 협정문 중에서 명시적으로 농업분야와 관련된 부분으로는 협정문 제5조(공정성, 비차별성, 투명성 증진을 위한 기타 조치)의 ‘수입국의 통제·검역 강화 조치 시 규율’과 제7조(물품의 반출 및 통관)의 ‘부패성 상품의 통관절차 원활화’를 들 수 있다.
- 협정문 제5조는 당초 개도국을 대표하는 인도가 제안한 내용을 기초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이며, 부패성 상품의 통관절차 원활화는 2012년 12월 무역원활화 협상 회의에서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브라질, 호주 및 뉴질랜드가 공동 제안한 것이다.

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입국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정보 및 거래비용의 감소를 유인함으로써 무역을 원활화시킬 수도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SPS 기준의 영향이 국내 및 해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개별 국가의 능력/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Moisé et al.(2013)도 SPS 및 TBT 기준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기준 제정과 집행에서 관련 기관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개도국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OECD and WTO(2013)에 따르면, 전세계 농식품 가치사슬 내에 있는 교역회사들의 60%가 해외로부터의 구매와 투자 결정을 할 때 품질과 안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도국 공급자들의 역량부족이 의사결정 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 3개 항으로 구성된 제5조는 수입국이 식품·음료·사료에 대한 통제·검사와 같은 국경조치를 강화할 시 지켜야 하는 원칙(제1항)과, 수입국이 통관 서류 시 이를 즉시 수출국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제2항), 수입 신고된 상품의 시료검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요청이 있으면 수입국은 수출국에게 2차 검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제3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Article 5. OTHER MEASURES TO ENHANCE IMPARTIALITY,
NON-DISCRIMINATION AND TRANSPARENCY**

1. Notifications for enhanced controls or inspections

Where a Member adopts or maintains a system of issuing notifications or guidance to its concerned authorities for enhancing the level of controls or inspections at the border in respect of foods, beverages or feedstuffs covered under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for protecting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within its territory, the following disciplines shall apply to the manner of their issuance, termination or suspension:

- a. each Member may, as appropriate, issue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based on risk.
- b. each Member may issue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so that it applies uniformly only to those points of entry where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condition on which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are based apply.
- c. each Member shall promptly terminate or suspend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when circumstances can be addressed in a less trade restrictive manner.
- d. when a Member decides to terminate or suspend the notification or guidance, it shall, as appropriate, promptly publish the announcement of its termination or suspension in a non-discriminatory and easily accessible manner, or inform the exporting Member or the importer.

2. Detention

A Member shall inform the carrier or importer promptly in case of detention of goods declared for importation, for inspection by Customs or any other competent authority.

3. Test Procedures

- 3.1. A Member may, upon request, grant an opportunity for a second test in case the first test result of a sample taken upon arrival of goods declared for importation shows an adverse finding.
- 3.2. A Member shall either publish, in a non-discriminatory and easily accessible manner, the name and address of any laboratory where the test can be carried out or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 importer when it is granted the opportunity under paragraph 3.1.

3.3. A Member shall consider the result of the second test in the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and, it appropriate, may accept the results of such test.

제5조: 공정성, 비차별성, 투명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타 조치

1. 강화된 통제 또는 검사에 대한 통지

회원국들은 영토 내에서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식품, 음료 또는 사료에 대한 국경에서의 통제나 검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당국에 공고나 지침을 통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유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해당 공고나 지침의 통지와 만료, 또는 지속 등을 실행해야 한다.

- a. 각 회원국은 위험에 근거하여 공고나 지침을 적절하게 통지해야 한다.
- b. 공지와 지침서에 기초한 위생과 식물위생 상태의 적용, 즉 오직 진입 지점에 일치되게 적용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은 공고나 지침을 주어야 한다.
- c. 각 회원국은 그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변화된 상황이 무역제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될 경우, 공고나 지침을 신속하게 종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 d. 각 회원국이 공고나 지침을 종료하거나 중단할 것을 결정할 때, 적절하고 신속하게 종료나 중단에 대해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포해야 한다. 또는 수출국이나 수입국에 알려야 한다.

2. 지연

회원국은 수입신고품이 세관이나 당국의 조사로 인해 억류될 경우, 운반업체나 수입국에 즉시 통보한다.

3. 검사 절차

- 3.1. 회원국은 수입신고품의 견본에 대한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 신청에 의해 재검사의 기회를 얻는다.
- 3.2. 회원국은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검사 수행이 가능한 실험소의 이름과 주소를 발행하거나, 3.1에 제시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동 정보를 수입국에 제공한다.
- 3.3. 회원국은 재검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출고나 통관을 이행하고, 적절하다면 그러한 검사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 그리고 협정문 제7조 제9항은 부패성 상품 검사에 우선순위 부여, 영업시간 외 통관 제공, 통관 지연으로 손해 발생 시 지연사유 서면 제공 등 수입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9. Perishable Goods

- 9.1. With a view to preventing avoidable loss or deterioration of perishable goods, and provided all regulatory requirements have been met, each Member shall:
 - a. provide for the release of perishable goods under normal circumstance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and
 - b. provide for the release of perishable goods,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do so, outside the business hours of customs and other relevant authorities.
- 9.2. Each Member shall give appropriate priority to perishable goods when scheduling any examinations that may be required.
- 9.3. Each Member shall either arrange, or allow an importer to arrange, for the proper storage of perishable goods pending their release. The Member may require that any storage facilities arranged by the importer have been approved or designated by its relevant authorities. The movement of the goods to those storage facilities, including authorizations for the operator moving the goods, may be subject to the approval, where required, of the relevant authorities. The Member shall, where practicable and consistent with domestic legislation, upon the request of the importer, provide for any procedures necessary for release to take place at those storage facilities.
- 9.4. In cases of significant delay in the release of perishable goods, and upon written request, the importing Membe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vide a communication on the reasons for the delay.

9. 부패하기 쉬운 상품

- 9.1. 부패성 상품의 회피가능 손실이나 악화를 방지하고, 모든 규제사항을 충족시키고자 각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른다.
 - a. 보통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부패성 상품 출고를 가능하도록 한다.
 - b. 예외적인 상황에서, 세관과 다른 유관기관들의 업무시간 이외에 부패성 상품의 출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9.2. 검사가 필요한 상품에 대해 일정을 잡을 때, 부패성 상품에 대한 적절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 9.3. 각 회원국은 부패성 상품 출고 시까지 보관할 적절한 창고를 지정하거나 수입업자가 지정하도록 한다. 동 회원국은 수입업자가 지정한 저장시설이 인가된 곳인지, 유관기관에 의해 지정된 곳인지에 대한 사항을 요청할 수도 있다. 상품을 이동하는 운반자의 허가를 포함하여 저장시설로의 상품의 이동은, 유관기

관의 요청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회원국은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실행 가능하고 국내법과 일치하는 선에서, 저장시설에서 출고 시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9.4. 부패성 상품의 출고 시 상당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 서면 요청에 따라, 수입하는 국가는 지연 사유에 대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이러한 농식품과 관련된 무역원활화 조치의 이행은 국제시장에서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전반적인 거래비용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축산물(농식품 포함)의 교역여건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국내 농업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시장개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에 발리에서 합의된 WTO의 무역원활화 조치가 이행된다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확대도 수출대상국들의 무역원활화 이행 수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세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번 무역원활화 협정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부담은 크지 않지만, 농식품 순수입국인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농식품 무역수지의 악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
 - 더욱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주력시장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동 등 개도국에 편중되어 있고, 주요 수입 농식품은 미국, EU,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정에 따른 무역원활화 조치의 이행성과가 농식품 수출과 수입에서는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 농정담당자와 학계에서는 국제사회의 무역원활화 논의내용과 주요 이슈를 주목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아직 국내에서는 농식품 교역에 초점을 맞추어 무역원활화의 성과를 조사·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지만, 해외에서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OECD에서도 일반 상품분야의 무역원활화 지표²⁴가 농식품 교역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하에 농식품 교역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무역원활화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 이러한 OECD의 시도는 개도국의 농축산물 무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24 OECD는 WTO/DDA 협상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무역원활화 조치들의 상대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나아가 개별 국가의 특정 무역원활화에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일련의 무역원활화 지표(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FIs)를 개발하였다(Moisé and Sorescu 2013). OECD가 개발한 무역원활화 지표들은 WTO가 제시한 조항들을 반영하여 정보 이용가능성, 사전 심사와 항소에서 문서 형식, 시간 지연, 통관 자동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그리고 통과무역 등에 관한 16개 지표들(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수집하고 관련 기관이 확인한 97개의 변수를 통해 계속)로 구성되어 있다. Moisé and Sorescu(2013)는 106개의 국가들을 소득 및 지리적 국가그룹별로 그리고 상품분야별로 구분하여 계량화된 이들 지표를 가지고 중력모형을 적용해 각 TFI가 양자 간 무역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TFIs는 전체 무역과 제조업 부문의 무역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업부문 무역에서는 추정부호가 기대와 다르게 추정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도 나타났다. 이는 저자들도 언급하였다시피 ‘부패가능 상품 여부’와 같이 제한된 숫자의 농업 관련 특정 변수가 TFIs 지표 설정 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제 5 장

DDA 농업분야 협상 전망과 과제

1. DDA 농업분야 협상 전망

- 그동안의 DDA 협상은 관세 및 보조금 감축수준, 개도국긴급관세조치(SSM)의 내용, 관세상한 인정 여부, TRQ 신설 여부 등의 문제에 집중하였고, 이번 9차 각료회의 농업분야에서 조기수확 대상으로 제기된 4가지 제안(TRQ 관리, 식량안보, 수출경쟁, 일반서비스)은 모두 이미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안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라 비교적 합의가 쉬울 것으로 여겨졌다.
 - 하지만 조기수확 접근법은 협상결과 전체를 일괄 타결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쉬운 것부터 타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별 이견이 없었던 내용일지라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다시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송주호 2013a).
- 비록 발리패키지의 4가지 각료결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할지라도 이들 제안을 둘러싼 논의들은 앞으로의 협상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업분야에 남아 있는 10여 개의 잔여쟁점 논의 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 특히, 조만간 쌀이 관세화로 전환되면 쌀의 TRQ 소진율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항구히 유지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제네바에서의 DDA 논의가 순조롭게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DDA 농업협상은 1)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2)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3)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이라는 세 가지 분야(three pillars)의 협상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 DDA는 WTO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관세인하 의무를 부여하며, 양자 또는 지역 무역협정인 FTA와는 달리 국내보조금의 감축과 수출보조 폐지 또한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농업과 농정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 UR 협상에서는 국내보조의 유형으로 감축의무가 없는 허용보조인 그린박스과 감축을 해야 하거나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보조총액측정치(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가 있었으나, DDA 협상에서는 AMS, de-minimis, 블루박스를 묶어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으로 새롭게 구분하고, 개별 유형의 보조규모와 사용에 따른 제한뿐만 아니라 이를 모든 합한 OTDS의 감축에 합의한 상태이다.
 - 즉, 각국의 전체 국내보조 규모를 줄이고, 보조유형별 그리고 품목별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하는 등 농업보조금의 운용을 다중으로 제약하는 실질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DDA 국내보조 분야 협상의 전반적인 방향이다.²⁵

²⁵ UR 농업협상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AMS가 줄어들어 대신에 블루박스나 최소허

- 이는 개별 항목별 보조에 대한 규정과는 별도로, 이들의 합계에 대한 감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정 보조의 감축률은 낮지만 사용비중이 매우 큰 나라의 경우 해당 보조의 합의된 감축률 이상으로 감축하도록 강제하여 국가 간 국내보조 수준의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 한편, UR 등 기존 다자간 무역협상과 비교하여 DDA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도국 우대조치(S&DT)는 DDA 협상의 모든 요소에서 본질적인 부분임을 모든 회원국이 동의한 협상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이다.
 - 특히, 각 분야의 세부적인 쟁점별로 개도국 우대조치가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내보조 분야의 OTDS, AMS, de-minimis, 블루박스 등의 세부 쟁점에 대한 조항들에도 선진국과 다르게 개도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대조치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 또한, DDA 농업협상의 모델리티는 시장접근 분야에서 4가지 요소를 구분하여 작성되었는데,²⁶ 이 중 한 가지 요소가 개도국 특별대우로서 특별품목(Special Product)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를 제시하고 있다.
- 결국, DDA 협상의 타결여부는 이러한 협상의 모든 요소에 녹아들어 있는 개도국 우대조치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차이가 어떻게 좁혀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용보조, 또는 허용보조(그린박스)가 증가하는 현상(box shifting)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무역왜곡보조의 실질적 감축(substantial reductions in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이라는 도하 각료회의의 지침에 따라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와 2004년 7월 기본골격의 협상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26 A. 관세감축공식, B. 민감품목, C. 기타 이슈, D. 개도국 특별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표 5-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농업분야의 잔여쟁점은 ① 개도국 특별긴급관세제도, ② 특별품목, ③ 관세상한, ④ 민감품목, ⑤ TRQ 신설, ⑥ 관세단순화, ⑦ 열대작물, ⑧ 특혜잡식, ⑨ 품목특정 블루박스 한도, ⑩ 면화 등이다.

- 2008년 말 모델리티 4차 수정안의 타결이 실패한 이후로 이들 잔여쟁점에 대한 협상에서는 각 쟁점별 개도국 우대조치를 중심으로 주요국들이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지속된 실무차원의 협상은 SSM에 관한 기술적인 토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행계획서(C/S) 작성을 위한 양식(template)과 관련 데이터 논의도 이루어졌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추후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세부원칙 조항들의 명확화 이슈들에 대해서도 주요국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표 5-1. DDA 농업 모델리티 잔여쟁점 및 주요국 입장

	4차 수정안	주요국 입장
TRQ 신설	○ 신설불가/[가능 시 세번의 1%] [민감품목보다 2% 추가 보상]	○ G-10 : 도입 필요 ○ 수출국 : 기본 반대입장, 필요 시 충분한 보상 필요
특별품목	○ 가능품목 수 : 12%, Zero cut : 5% ○ 평균감축률 : 11%	○ G-33 : 다른 이슈와 타협 산물, 재협상 반대 -인니 : SP 수치는 각료 간 결정 필요 ○ 미국 : 수용불가 ○ 수출 개도국 : 자국 품목 해결 요구
민감품목	○ 개수 : 4%+2%(EFTA 및 일본) ○ TRQ 증량: 소비량의 4%	○ 일본, 캐나다 : 8%, 6% 필요 ○ 수출국 : 4%(품목 추가 시 보상 수준을 높일 필요)
SSM	○ UR 양허관세 초과 : 제한 인정(W/7) -120-140 : 33%, 8%p -140 이상 : 50%, 12%p * Prorating, Cross-check, Seasonality, Duration, Spillover 제약 조건 도입	○ G-33 : W/7의 제 조건 수용불가 ○ 수출국 : 발동제한 조건 필요 -미국 : 구체적 상황, 대상에 중점 -브라질 : Normal trade 및 Import surge에 중점 ○ EU : 원점에서 재검토 주장

	4차 수정안	주요국 입장
관세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상한(100%) 적용 예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 중 1%] * TRQ 증량 등 추가보상(0.5%) 필요 ○ 관세상한(150%) 적용 예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 민감품목은 추가 보상 필요(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10 : 도입에 반대하나 Rev. 4 및 W/6기 초로 논의 가능 ○ 수출국 : NAMA 협상과의 균형을 감안, 도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민감 1% 예외 보상 수준 (전 민감품목 0.5% 증량) 불충분
관세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100% 단순화/[90%] ○ 방식 : Annex N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10/EU : 90%, 85% 주장 ○ 수출국 : 100% 단순화 주장 ○ EU : Rev. 4 및 Annex N과의 불일치 해소 필요
Blue Box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95-'00 BB 지급액에 기초, '02 농업법 품목별 지급 비율의 [110% or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정치적 이슈로 인식 ○ 중국 : NAMA와 수평적 이슈 ○ 브라질 : 105%
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화보조 : 일반 AMS보다 더 감축 ○ BB : 일반의 1/3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다른 pillar 와 종합 검토 ○ Cotton 4 : 신속 해결 ○ G-20 : Cotton 4 지지
열대작물/특혜잡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대작물 : [25% 이하 철폐 or 10% 이하 철폐] ○ Annex H 품목은 개도국 관세감축기간(10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 동 내용 논의 시 초청 받지 못했으므로 동의할 수 없음 ○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모리셔스 : 재협상 곤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b). DDA 협상 논의동향 설명자료(내용 일부 수정).

2. 협상 전략 및 향후 과제

- DDA 협상의 세부적인 사안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농업 모델리티 협상종료 전에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과제인 개도국 지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만약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은 상태에서 DDA가 타결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개별 FTA를 능가할 수도 있다.²⁷

27 최근에 발효된 한·EU FTA와 한·미 FTA의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각각

- 국내보조 분야의 대부분의 조항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규정이 적용되고, 더 긴 이행기간이 부여되는 등 많은 신축성을 보장받는다. 농업 보조금의 운용과 농정수단의 선택에 더 많은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국내보조 분야의 모든 규정들은 우리나라 농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 구간별 관세 감축방식에 있어서도 개도국은 선진국의 2/3 수준이고, 관세상한에 있어서도 선진국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 개도국은 더 많은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RQ 증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 개도국은 특별품목을 사용할 수 있다. 특별품목에는 낮은 관세감축률이 적용되고 TRQ 증량이 없어 민감품목보다 유리하다.
 - 또한 개도국은 SSM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UR의 SSG에 비해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조치이다. 또한, 기존 SSG가 철폐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향후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사후 구제조치로써 필요한 제도로 평가된다.
 -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면, 열대작물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품목 중 상당수가 열대작물에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 하지만 지금처럼 DDA 타결이 지연될수록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 UR 협상 당시에도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은 개도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나라는 농업이 낙후되어 있어 농업협상에서는 개

92%, 98%인 점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품목별로 33.3~46.7%의 관세감축률을 제시하고 있는 DDA(개도국 기준)에 비추어 이들 FTA로 인해 국내 농업은 이미 큰 규모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셈이다.

도국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 그러나 DDA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과 수출 개도국 그룹인 G20, 그리고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EU 등은 이미 여러 차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공공연히 불만을 내비쳐 왔다.
 - 협상 초기인 2001년에 비해, 2014년 이후에 우리의 농업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해야 하는 것들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
- 요약하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나 예외조치를 대폭 늘린 DDA 농업분야 협상에서 개도국이나 선진국이나의 차이는 UR 협정과 비교해서 국내농업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개도국 지위의 확보가 가장 큰 협상목표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현실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완전하게 누리기보다는, 국내농업에 미치는 피해가 작은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선진국 의무사항에 참여하거나, 개도국 권리를 축소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DDA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에 준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되 주요국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품목이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양자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²⁸
 - DDA 협상에서는 열대작물, 경사관세, 면화 보조금 분야와 같이 선진국 의무사항이지만 능력이 됨을 선언하는 개도국은 자발적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결국, 주요 수출국과의 양자협상에서만

28 우리나라와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국가들은 FTA로 인해 자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역외국보다 우월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국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다.

아니라 전체 회원국들의 반감을 완화시키는 전략으로써, 이들 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대비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최근 10여 년 동안 DDA와 같은 다자무역체제의 진전이 지체되면서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주요국과의 FTA 체결에 두었다. 이로 인해 DDA보다는 FTA가 국내 농업분야에 당장 직면한 위협이다. 최근의 한·EU FTA와 한·미 FTA 발효, 한·중 FTA 협상 가속화 등으로 인해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향후 20년 이내에 해당국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이다. 이는 5년 동안 품목별로 50~70%의 관세감축률을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 기준이 적용되는 DDA 농업협정’에 비견될 수 있는 규모의 시장개방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²⁹
 - 결국,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농산물의 원산지인 미국이나 중국과의 FTA까지 발효될 경우 DD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의 파급효과(관세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FTA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선진국 기준으로 DDA가 타결될 경우의 국내 농업분야 파급효과를 계측하고, 이에 따라 개도국 지위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기존의 협상전략을 재고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 한편,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의 C/S를 선진국 기준으로 작성한 다음,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에 대한 보상방안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²⁹ 특히, DDA 타결에 앞서 한·중 FTA가 발효되면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 규모는 선진국 기준으로 DDA가 타결될 경우보다 크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 예를 들어, AMS/OTDS 한도와 이행기간의 신축적인 적용, 블루박스의 신설요건 완화, 민감품목의 개수 확대와 보상요건 완화, 관세상한 적용 면제, 열대작물 의무면제 등 우리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규정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쌀의 관세화전환에 대한 특별대우(MMA 물량 감축, 고관세 설정 허용, 관세상한 적용 면제 등)를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WTO 회원국 중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자발적으로 변경한 최초의 사례인 만큼, 바람직한 선례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회원국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협상전략 외에도 국내농업의 체질을 바꾸는 노력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DDA 이행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해야 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농업보조의 체계를 개편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 또한, 우리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해외시장의 문턱도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 농축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농업인들도 수출조직화, 신제품 개발, 생산비 절감 등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때이다.

참고 문헌

- 관세청. 보도자료(2013. 12. 12.).
- 농림축산식품부. 2013a. 보도자료(2013. 12. 8.).
- 농림축산식품부. 2013b. DDA/FTA 농업분야 협상동향 설명자료(2013. 12.).
- 농수산물유통공사(KATI). <www.kati.net>.
- 문한필 외. 2011. 「DDA 농업협상 중간점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진교 외. 2013. 「G20의 TRQ 관리 이행 제안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진교 외. 2014.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대응」.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송주호. 2013a.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제73호(2013. 10. 10.).
- 송주호. 2013b. “2013년 12월 발리에서 생긴 일.” 「농경나눔터」 2013년 12월호. vol. 404.
- 이주명. 2013. “WTO 제9차 각료회의 농업분야 성과와 향후 전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정책세미나(2013. 12. 19.) 발표자료.
- 임송수. 2013a. “OECD 및 ADB 논의 동향.” 「세계농업」 2013년 6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송수. 2014b. “WTO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세계농업」 2014년 1월호. vol. 161.
- Crivelli, P., and J. Gröschl. 2012. “SPS Measures and Trade: Implementation Matters.” World Trade Organization Staff Working Paper ERS-2012-05, February.
- Moisé, E. et al. 2013. “Estimating the Constraints to Agricultural Trade of Developing Countries.” OECD *Trade Policy Papers*. no. 142. OECD Publishing.
- Nicita, A., and J. Gourdon. 2013. “A Preliminary Analysis on Newly Collected Data on Non Tariff Measures.” UNTAD Policy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odities Study Series. no. 53.
- Washington Trade Daily*. 2013. 3. 12.
- WTO(www.wto.org).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Potential Impact on Trade Costs(Feb, 2014).
- 程國強. 2011. “中國農業政策的支持水平與結構特征.” 「發展研究」. 2011年 第9期.

부록 130: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TRQ 관리)

<p>World Trade Organization</p>	<p style="text-align: right;">WT/MIN(13)/W/11</p> <p style="text-align: right;">6 December 2013</p>
<p>(13-6725)</p> <p>Ministerial Conference Ninth Session Bali, 3-6 December 2013</p> <p style="text-align: center;">UNDERSTANDING ON TARIFF RATE QUOTA ADMINISTRATION PROVIS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p> <p style="text-align: center;">DRAFT MINISTERIAL DECISION</p> <p>The Ministerial Conference,</p> <p style="padding-left: 40px;">Having regard to paragraph 1 of Article IX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p> <p style="padding-left: 40px;">Decides as follows:</p> <p>Without prejudice to the overall conclusion of the Doha Round negotiations based on the single undertaking and to the continuation of the reform process enshrined in Article 20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agreed in the Doha Development Agenda for negotiations in agriculture 1 , Members hereby agree as follow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ariff quota administration of scheduled tariff quotas shall be deemed to be an instance of "import licensing" within the meaning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and, accordingly, that Agreement shall apply in full, subject to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to the following more specific and additional obligations. 2. As regards the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4(a) of Article 1 of that Agreement, as these agricultural tariff quotas are negotiated and scheduled commitments, publication of the relevant information shall be effected no later than 90 days prior to the opening 	

30 부록 1~4의 한글번역본은 ‘임송수. 2014 “WTO 발리 각료회의 합의문.” 『세계농업』 2014년 1월호. vol. 161.’에서 발췌하였다.

date of the tariff quota concerned. Where applications are involved, this shall also be the minimum advance date for the opening of applications.

3. As regards paragraph 6 of Article 1 of that Agreement, applicants for scheduled tariff quotas shall apply to one administrative body only.
4. As regards the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5(f) of Article 3 of that Agreement, the period for processing applications shall be, unqualifiedly, no longer than 30 days for "as and when received" cases and no longer than 60 days for "simultaneous" consideration cases. The issuance of licences shall, therefore, take place no later than the effective opening date of the tariff quota concerned, except where, for the latter category, there has been an extension for applications allowed for under Article 1.6 of that Agreement.
5. As regards Article 3.5(i), licences for scheduled tariff quotas shall be issued in economic quantities.
6. Tariff quota "fill rates" shall be notified.
7. In order to ensure that their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consistent with Article 3.2 of that Agreement, "no more administratively burdensome than absolutely necessary to administer the measure", importing Members shall ensure that unfilled tariff quota access is not attributable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that are more constraining than an "absolute necessity" test would demand.
8. Where licences held by private operators exhibit a pattern of being less than fully utilized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that would be expected to be followed by a normal commercial operator in the circumstances, the Member allocating the licences shall give this due weight when examining the reasons for under utilization and considering the allocation of new licences as provided for under Article 3.5 (j) .
9. Where it is manifest that a tariff quota is under filled but there would appear to be no reasonable commercial reason for this to be the case, an importing Member shall request those private operators holding unused entitlements whether they would be prepared to make them available to other potential users. Where the tariff quota is held by a private operator in a third country, e.g. as a result of country-specific allocation arrangements, the importing Member shall transmit the request to the holder of the allocation concerned.
10. As regards Article 3.5(a)(ii) of that Agreement, Members shall make available the contact details of those importers holding licences for access to scheduled agricultural tariff quotas, where, subject to the terms of Article 1.11, this is possible and/or with their consent.

11.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shall review and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Members' obligations established under this Understanding.
12. Members shall provide for an effective re-allocation mechanism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outlined in the Annex A.
13. A review of the operation of the Decision shall commence no later than four years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Decision, taking into account experience gained up to that time. The objective of this review will be to promote a continuing process of improvement in the utilization of tariff rate quotas. In the context of this review the General Council shall make recommendations to the 12th Ministerial Conference 2 , including on whether, and if so how, paragraph 4 of Annex A should be re-affirmed or modified for future operation.
14. The General Council recommendations in relation to paragraph 4 shall provide for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Unless the 12th Ministerial Conference decides to extend paragraph 4 of Annex A in its current or a modified form, it shall, subject to paragraph 15, no longer apply.
15. Notwithstanding paragraph 14, Members shall continue to appl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Annex A in the absence of a decision to extend that paragraph, except for those Members who wish to reserve their rights not to continue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4 of Annex A and who are listed in Annex B.

ANNEX A

During the first monitoring year, where an importing Member does not notify the fill rate, or where the fill rate is below 65 per cent, a Member may raise a specific concern regarding a tariff quota commitment in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and place this concern on a tracking register maintained by the Secretariat. The importing Member shall discuss the administration of the tariff quota with all interested Members, with the aim of understanding the concerns raised, improving the membership's understanding of the market circumstances 3 and of the manner in which the tariff quota is administered and whether elements of the administration contribute to underfill. This shall take place on the basis of provision of objective and relevant data bearing on the matter, in particular as regards the market circumstances. The interested Members shall fully consider all documentation submitted by the importing Member. 4 The importing Member shall provide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a summary of any documentation submitted to interested Members. The Members involved shall advise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whether the matter has been resolved. The interested Members shall, if the matter remains unresolved, provide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a clear statement of the reasons, based on the discussions and documentation provided, why the matter requires further consideration. Such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may also be provided and considered in the same manner during the second and third stages of the underfill mechanism, as a means of addressing and resolving Members' concerns.

17. Once the underfill mechanism has been initiated, where the fill rate remains below 65 per cent for two consecutive years, or no notification has been submitted for that period, a Member may request, through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that the importing Member take specific action(s) 5 to modify the administration of the tariff quota concerned. The importing Member shall take either the specific action(s) requested or, drawing on the discussions previously held with the interested Members, such other action(s) which it considers will effectively improve the fill rate of the tariff quota. If the action(s) of the importing Member lead to a fill rate above 65 per cent or interested Members are otherwise satisfied that lesser fill rates are indeed attributable to market circumstances based on the data-based discussions that have taken place, this will be noted and the concern marked "resolved" on the Secretariat's tracking register and will be no longer subject to monitoring (unless at some future point the process is restarted but, if so, it will be a new three year cycle) . If the fill rate remains below 65 per cent, a Member may continue to request additional modifications to the administration of the tariff quota.
18. During the third and subsequent monitoring years, where:
 - a. the fill rate has remained below 65 per cent for three consecutive years or no notification has been submitted for that period; and
 - b. the fill rate has not increased, for each of the preceding three years, by annual increments of
 - i. at least 8 percentage points when the fill rate is more than 40 per cent;
 - ii. at least 12 percentage points when the fill rate equals or is less than 40 per cent 6 ; and
 - c. the data-based discussions regarding market circumstances have not led to the conclusion among all interested parties these are in fact the reason for underfill; and
 - d. an interested Member makes a statement in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that it wishes to initiate the final stage of the underfill mechanism.
19. The importing Member shall then promptly provide unencumbered access via one of the following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7 : a first-come, first-served only basis (at the border); or an automatic, unconditional license on demand system within the tariff quota. In taking a decision on which of these two options to implement, the importing Member will consult with interested exporting Members. The method selected shall be maintained by the importing Member for a minimum of two years, after

which time - provided that timely notifications for the two years have been submitted - it will be noted on the Secretariat's tracking register and the concern marked "closed". Developing country Members may choose an alternative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 or maintain the current method in place. This choice of an alternative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 shall be notified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mechanism. The method selected shall be maintained by the importing Member for a minimum of two years, after which time, if the fill rate has increased by two-thirds of the annual increments described in paragraph 3(b), it will be noted on the Secretariat's tracking register and the concern marked "closed".

20. The availability of this mechanism and resort to it by any Member is without prejudice to Member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in respect of any matter dealt with under the mechanism and,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the provisions of the covered agreements shall prevail.

ANNEX B

Barbados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uatemala
United States of America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 번역본(TRQ 관리)

각료회의는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 9조 1항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1. TRQ 관리방식은 UR 수입허가절차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에 명시된 “수입허가(import licensing)”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이 협정은 농업협정과 아래 세부 요건의 제약아래 완전한 형태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수입허가절차 협정의 1조 4(a)항과 관련 농업 TRQ가 협상되고 양허되었을 때에 관련 정보가 TRQ 개시 최소 90일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쿼터배분신청이 필요할 경우 신청 개시 이전에 같은 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3. 이 협정 1조 6항과 관련 TRQ 신청자는 오직 한 관리부서에 지원해야 한다.

4. 이 협정 3조 5(f)항에 언급된 문제와 관련해 신청 처리기간은 신청 접수(“as and when received” case)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신청과 승인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simultaneous” case)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발행이 관련 쿼터의 효과적인 개시일 보다 늦게 이뤄지지 않아야 하는데, 협정의 1.6조 아래 신청 연장의 경우는 예외이다.
5. 3조 5(i)항과 관련 TRQ 허가는 경제적 물량(economic quantity)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6. 쿼터 소진율(fill rates)은 통보되어야 한다.
7. 수입관리 절차가 협정의 3.2조, 곧 조치의 이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입국은 미소진 쿼터에 대한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검증(absolute necessity test)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제약하는 행정 절차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도록 보장해야 한다.
8. 민간업자에 의해 소유된 수입허가가, 정상적인 운영자가 같은 상황에서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이외의 이유로 완전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 현상을 나타낼 경우 허가를 배분하는 회원국은 미활용 이유를 검토하고, 3조 5(j)항에 따라 새롭게 허가 배분을 고려할 때 이를 감안해야 한다.
9. 쿼터가 소진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나 이에 대한 상업적인 이유가 없다면 수입국은 미소진 수입권한을 소유한 민간 운영자로 하여금 다른 잠재적 사용자에게 수입권한을 이양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배분(country-specific allocation)처럼 쿼터가 제3국의 민간 운영자에 의해 소유된 경우 수입국은 수입권한 양도를 요구해야 한다.
10. 이 협정의 3조 5(a)(ii)항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쿼터 양허물량에 접근할 수 있는 수입권한을 소유한 수입업자에 관한 자세한 연락처를 공개하되, 1조 11항의 조건아래 수입업자의 동의를 얻거나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1.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는 이 양해서 아래 회원국의 의무사항 이행을 검토하고 감독해야 한다.
12. 회원국은 부속서 A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효과적인 재분배(re-allocation) 체계를 갖춰야 한다.
13. 이 합의문의 운영에 관한 검토는 합의문을 채택한 후 4년차 전에 시행하되 그 때까지 축적한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검토의 목적은 쿼터 활용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검토의 전후 과정에서 일반 이사회(General Council)는 부속서 A의 4항을 재확인하고 또는 미래 운영방식을 조정할지 여부와 그 방법을 포함하여 12차 각료회의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14. 4항에 관한 일반 이사회 회의 제안서는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12차 각료회의가 부속서 A의 4항을 현재대로 또는 개선된 형태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15항

에 따라 이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15. 위 1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이 조항의 연장에 관한 결정의 부재 시 부속서 A의 4항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부속서 A의 4항에 대한 적용을 지속하지 않을 것을 표명한 회원국과 부속서 B에 제시된 회원국은 예외로 한다.

부속서 A

1. 검토 첫해에 수입국이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소진율이 65% 미만일 경우 어느 회원국이라도 농업위원회에 쿼터 의무사항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관심사항을 사무국(Secretariat)이 관리하는 추적 기록부(tracking register)에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수입국은 모든 이해 당사국들과 쿼터 관리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논의의 목적은 제기된 관심사항의 이해, 시장상황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 증진, 쿼터가 관리되는 방식과 그 관리방식의 특정 요인이 쿼터 미소진의 원인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논의는 특히 시장상황에 관한 객관적이고 적절한 자료의 제공 아래 이뤄져야 한다. 이해 당사국은 해당 수입국이 제출한 모든 문서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해당 수입국은 이해 당사국에 제출한 모든 문서의 요약본을 농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된 회원국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여부를 농업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해 당사국들은 논의와 제공된 문서를 기초로 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지에 관한 명확한 진술서를 농업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와 정보는 회원국의 관심사항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2단계와 3단계의 미소진 체계(underfill mechanism)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고려될 수 있다.
2. 소진율이 2년 연속 65%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소진율이 통보되지 않아 미소진 체계가 발동되면 어느 회원국이라도 농업위원회를 통해 해당 수입국이 관련 쿼터의 관리방식을 조정하는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수입국은 요구된 특정 조치 또는 이해 당사국들과 이전에 가진 논의에서 도출한, 쿼터 소진율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만약 수입국의 이러한 조치가 소진율 65%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데이터에 기초한 논의를 통해 낮은 소진율이 실제로 시장상황에 의한 것임을 이해 당사국들이 납득하였다면 이 사실은 사무국의 추적 기록부에 기록되고 해당 관심 사항이 “해결된(resolved)” 것으로 표시되어 더 이상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단,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 과정이 다시 시작되지 않아야 하고,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3년 주기의 절차가 될 것이다). 만약 소진율이 65% 미만으로 남아 있다면 어떤 회원국이라도 쿼터 관리방식에 관한 추가적인 개선을 계속 요구할 수 있다.
3. 3차년 및 이후 검토 기간에 다음에 해당될 경우
 - a.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거나 해당 기간에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 b. 이전 3년 동안 연간 소진율 증가가 다음처럼 이뤄지지 않았을 때
 - i. 소진율이 40%를 초과할 때 최소 8% 포인트
 - ii. 소진율이 40% 이하일 때 최소 12% 포인트
 - c. 데이터에 기초한 시장 상황 관련 논의가 모든 이해 당국들 사이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이것들이 사실상 미소진의 이유일 때
 - d. 어떤 이해 당사국이라도 미소진 체계의 최종 단계를 발동하길 원한다는 의향서를 농업위원

회에 제시한 경우

4.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수입국은 신속하게 다음 쿼터 관리방식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국경에서 오직 선착순에 의한 배분, 또는 쿼터 상한아래 요구에 따른 자동적, 비조건부 허가 중 제시). 이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것을 이행할지와 관련하여 해당 수입국은 수출 이해 당사국들과 상의해야 한다. 선택된 방법은 최소한 2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그 2년간의 실적 이 적절히 통보될 경우 사무국의 추적 기록부에 등록되어 해당 관심사항이 “종료(closed)” 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개도국은 다른 쿼터 관리방식을 채택하거나 현재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미소진 체계아래 다른 쿼터 관리방식은 농업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선택된 방식은 해당 수입국에 의해 최소 2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그 이후 만약 소진율이 위 3(b)항에 제시된 연간 증가율의 2/3만큼 증가하였다면 사무국의 추적 기록부에 등록되어 “종료” 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5. 회원국에 의한 미소진 체계의 이용 가능성은 그 체계아래 다루어지는 문제들과 관련된 협정들이 명시한 다른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떠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당 협정의 규정들이 우선 적용될 것이다.

부속서 B

바베이도스(Barbados)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
 엘살바도르(El Salvador)
 과테말라(Guatemala)
 미국(USA)

부록 2: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World Trade Organization	WT/MIN(13)/W/10 6 December 2013
<p>(13-6727) Ministerial Conference Ninth Session Bali, 3-6 December 2013</p> <p style="text-align: center;">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DRAFT MINISTERIAL DECISION</p> <p>The Ministerial Conference, Having regard to paragraph 1 of Article IX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p> <p style="text-align: center;"><i>Decides</i> as follows:</p> <p>1.1. Members agree to put in place an interim mechanism as set out below, and to negotiate on an agreement for a permanent solution¹, for the issue of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for adoption by the 11th Ministerial Conference.</p> <p>1.2. In the interim, until a permanent solution is found, and provided that the conditions set out below are met, Members shall refrain from challenging through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compliance of a developing Member with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6.3 and 7.2 (b)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oA) in relation to support provided for traditional staple food crops² in pursuance of public stockholding programmes for food security purposes existing as of the date of this Decision,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criteria of paragraph 3, footnote 5, and footnote 5&6 of Annex 2 to the AoA when the developing Member complies with the terms of this Decision.³</p> <p>NOTIFICATION AND TRANSPARENCY</p> <p>1.3. A developing Member benefiting from this Decision must: have notified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that it is exceeding or is at risk of exceeding either or both of it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limits (the Member's Bound Total AMS or the <i>de minimis</i> level) as result of its programmes men-</p>	

tioned above;
have fulfilled and continue to fulfil its domestic support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the
AoA in accordance with document [G/AG/2](#) of 30 June 1995, as specified in the Annex;
have provided, and continue to provide on an annual basis, additional information by completing the template contained in the Annex, for each public stockholding programme that it maintains for food security purposes; and
provide any additional relevant statistical information described in the Statistical Appendix to the Annex as soon as possible after it becomes available, as well as any information updating or correcting any information earlier submitted.

ANTI-CIRCUMVENTION/SAFEGUARDS

- 1.4. Any developing Member seeking coverage of programmes under paragraph 2 shall ensure that stocks procured under such programmes do not distort trade or adversely affect the food security of other Members.
- 1.5. This Decision shall not be used in a manner that results in an increase of the support subject to the Member's Bound Total AMS or the de minimis limits provided under programmes other than those notified under paragraph 3.a.

CONSULTATIONS

- 1.6. A developing Member benefiting from this Decision shall upon request hold consultations with other Members on the operation of its public stockholding programmes notified under paragraph 3.a.

MONITORING

- 1.7.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shall monitor the information submitted under this Decision.

WORK PROGRAMME

- 1.8. Members agree to establish a work programme to be undertaken in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to pursue this issue with the aim of making recommendations for a permanent solution. This work programme shall take into account Members' existing and future submissions.
- 1.9. In the context of the broader post-Bali agenda, Members commit to the work programme mentioned in the previous paragraph with the aim of concluding it no later than the 11th Ministerial Conference.

1.10. The General Council shall report to the 10th Ministerial Conference for an evaluation of the operation of this Decision, particularly on the progress made on the work programme.

**ANNEX
Template
[Developing Member's name]**

General information

1. Factual information confirming that DS:1 notifications and relevant supporting tables for the preceding 5 years are up-to-date (e.g. date and document details)
Details of the programme sufficient to identify food security objective and scale of the programme, including:
Name of the programme
Traditional staple food crop(s) covered
Agency in charge of implementatio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Date of commencement of the programme
Officially published objective criteria or guidelines
Practical description of how the programme operates, including:
Provisions relating to the purchase of stocks, including the way the administered acquisition price is determined
Provisions related to volume and accumulation of stocks, including any provisions related to pre-determined targets and quantitative limits
Provisions related to the release of stocks,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release price and targeting (eligibility to receive procured stocks)
A description of any measures aimed at minimising production or trade distortive effects of the programme
Statistical information (as per the Statistical Appendix below)
Any other information considered relevant, including website references

Statistical Appendix (per crop) (data for the latest three years)

	Unit	[Year 1]	[Year 2]	[Year 3]
[Name of the crop]				
a. Opening balance of stocks				
Annual purchases under the programme (value)				
Annual purchases under the programme (quantity)				
Annual releases under the programme (value)				
Annual releases under the programme (quantity)				

Purchase prices				
Release prices				
End-year stocks				
Total production (quantity)				
Total production (value)				
Information on population benefiting from the release of this crop and quantities released:				
Estimated number of beneficiaries at national level and, if possible, at sub-national level				
Quantity released to the beneficiaries at the national level and, if possible, at the sub-national level				
Other				
In the case of government aid to private storage, statistics on the support granted and any updated statistics				
Total imports (value)				
Total imports (quantity)				
Total exports (value)				
Total exports (quantity)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 번역본(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각료회의는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 9조 1항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1. 회원국들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문제와 관련해 아래에 명시한 잠정조치(interim mechanism) 도입에 합의하고, 제11차 각료 회의 때까지 채택할 영구 해결책(permanent solution)에 관한 협정을 협상하기로 한다.
2. 영구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회원국들은 WTO의 분쟁해결 절차(Dispute Settlement Mechanism)를 통한 분쟁 제기를 자제해야 한다. 이는 개도국이 이 결정문의 조건들을 따를 경우 전통적인 주곡 식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추구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프로그램이 농업협정 부속서 2의 3항, 각주 5 및 각주 5와 6의 기준과 일관된 농업협정 6.3조와 7.2(b)조의 요건에 대한 이행이다.

통보와 투명성(Notification and Transparency)

3. 이 결정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도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농업위원회에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프로그램으로 인해 해당 국가의 AMS 기준(총 양허 AMS 또는 최소허용보조)을 초과했거나 또는 초과할 위기에 있다는 것을 보고해야 한다.
 - 1995년 6월 30일 G/AG/2 문서 내용과 일치하는 농업 협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개발도상국가의 국내 보조에 대해 계속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부속서 내용 참조).
 - 부속서에 수록된 견본을 참고하여 매년 식량 안보 목적 공공 비축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및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이전에 보고된 정보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부속서의 통계 부록에 표기된 추가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회피 방지/세이프가드(Anti-Circumvention/Safeguards)

- 위 2항의 내용에 따른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개도국은 프로그램으로부터 조달된 비축 물량이 무역을 왜곡하거나 다른 나라의 식량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이 결정문이 위 3(a)항 아래 통보된 것 이외의 프로그램에서 회원국의 총 AMS 양허수준이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대상 보조규모를 증가시키는 형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자문(Consultations)

- 이 의사결정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개도국은 다른 회원국들의 신청을 받아 그들의 공공 비축 프로그램의 운용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어야 한다.

모니터링(Monitoring)

- 농업 위원회는 의사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관찰 및 감시해야 한다.

작업 계획(Work Programme)

- 회원국들은 영구적 해결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설립하는데 동의한다. 이 작업 계획은 회원국들의 현재와 미래의 개진 사항들을 고려할 것이다.
- 발리 이후 의제(Post-Bali agenda)의 확장선상에서 회원국들은 늦어도 제11차 각료 회의 때까지 작업 계획을 만들어 종결해야 한다.
- 일반 이사회(General Council)는 작업계획의 운용 평가에 관해 제10차 각료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부속서 양식(Template)

[개도국 회원 국가의 이름]

부록 3: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일반서비스)

World Trade Organization	WT/MIN(13)/W/9
	6 December 2013
<p>(13-6718) Ministerial Conference Ninth Session Bali, 3-6 December 2013</p> <p style="text-align: center;">GENERAL SERVICES DRAFT MINISTERIAL DECISION</p> <p>The Ministerial Conference,</p> <p>Having regard to paragraph 1 of Article IX of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p> <p>Decides as follows:</p> <p>Members recognize the contribution that General Services programmes can make to rural development, food security and poverty alleviation,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includes a range of General Services programmes relating to land reform and rural livelihood security that a number of developing countries have highlighted as particularly important in advancing these objectives. Accordingly, Members note that, subject to Annex 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the types of programmes listed below could be considered 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 non-exhaustive list of general services programmes in Annex 2, paragraph 2 of the AoA.</p> <p>General Services programmes related to land reform and rural livelihood security, such a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land rehabilitation; ii. soil conservation and resource management; iii. drought management and flood control; iv. rural employment programmes; v. issuance of property titles; and vi. farmer settlement programmes <p>in order to promote rural development and poverty alleviation.</p>	

발리 각료회의의 결정문 번역본(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각료회의는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 9조 1항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회원국들은 일반 서비스 프로그램이 특히 개도국의 농촌 발전, 식량 안보, 빈곤 완화 등에 이바지해 온 점을 인정한다. 이는 많은 개도국들이 토지 개혁과 농촌 생계보장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다양한 일반 서비스 프로그램을 말한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WTO 농업 협정 부속서 2의 2항의 제약 속에서 아래에 열거된 프로그램 형태를 농업협정 부속서 2의 2항에 예시된 일반 서비스 프로그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농촌개발과 빈곤 완화를 위한 토지 개혁과 농촌 생계보장과 관련한 일반 서비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i . 토지 복구(land rehabilitation)
- ii . 토양 보존과 자원 관리(soil conservation and resource management)
- iii . 가뭄 관리와 홍수 통제(drought management and flood control)
- iv . 농촌 고용 프로그램(rural employment program)
- v . 부동산 소유권 발행(issuance of property titles)
- vi . 농민 정착 프로그램(farmer settlement program)

부록 4: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수출경쟁)

World Trade
Organization

WT/MIN(13)/W/12

6 December 2013

(13-6719)

Ministerial Conference

Ninth Session

Bali, 3-6 December 2013

EXPORT COMPETITION

DRAFT MINISTERIAL DECLARATION

- 1.1. We recognize that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are a highly trade distorting and protectionist form of support, and that, accordingly, export competition remains a key priority of the agriculture negotiations in the context of the continuation of the ongoing reform process set out in Article 20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in accordance with the Doha work programme on agriculture and the 2005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 1.2. In this context, we therefore reaffirm our commitment, as an outcome of the negotiations, to the parallel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disciplines on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as set out in the 2005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We regret that it has not been possible to achieve this objective in 2013 as envisaged in that Declaration.
- 1.3. We consider that the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doc. TN/AG/W/4/Rev.4 dated 6 December 2008) remain an important basis for an ambitious final agreement in the export competition pillar, including with regard to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LDCs and NFIDCs.
- 1.4. We recognize the decrease in recent years in the use of export subsidies subject to reduction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s indicated by information contained in Members' notifications to the WTO, and the positive developments that have also taken place in other areas of the export competition pillar.
- 1.5. We recognize that the reforms undertaken by some Members have contributed to this positive trend. We emphasize however that this generally positive trend is not a sub-

stitute for the attainment of the final objective on export competition in the Doha negotiations.

- 1.6.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solidating progress in this area within the Doha negotiations so as to achieve as soon as possible the final objective set out in the 2005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and we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further engagement among Members to this end.
- 1.7. We therefore reaffirm the importance of Members maintaining and advancing their domestic reform processes in the field of export competition. We strongly encourage those Members who have engaged in reforms to continue in that direction and Members yet to undertake reforms to do so, given the positive impact that such reforms can have and the significant negative consequences that failure to reform would generate.
- 1.8. With the objective on export competition set out in the 2005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in mind and with a view to maintaining the positive trend noted previously, we shall exercise utmost restraint with regard to any recourse to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To this end, we undertake to ensur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at:
 - The progress towards the parallel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disciplines on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will be maintained;
 - The level of export subsidies will remain significantly below the Members' export subsidy commitments ;
 - A similar level of discipline will be maintained on the use of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 1.9. We agree that fulfilling the objective set out in the 2005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on export competition remains a priority issue for the post Bali work programme. We agree to continue to work actively for further concrete progress in this area as early as feasible.
- 1.10. Accordingly, we commit to enhance transparency and to improve monitoring in relation to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nd all export measures with equivalent effect, in order to support the reform process.
- 1.11. We therefore agree to hold dedicated discussions on an annual basis in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to examine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export competition. This examination process sha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Members to

raise any matter relevant to the export competition pillar, in furtherance of the final objective set out in the 2005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 1.12. This examination process shall be undertaken on the basis of timely notifications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related decisions, complemented by information compiled by the WTO Secretariat, consistent with the practice followed in 2013¹, on the basis of Members' responses to a questionnaire, as illustrated in the Annex.
- 1.13. We agree to review the situation regarding export competition at the 10th Ministerial Conference. We also agree that the terms of this declaration do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the covered agreements nor shall they be used to interpret those rights and obligations.

ANNEX

Elements for Enhanced Transparency on Export Competition

This Annex is intended to illustrate the types of information that would be requested by the Secretariat in the questionnaire mentioned in paragraph 12. It is understood that this questionnaire, which does not change Members' notification obligations, may be revised in the light of experience and of Members' further views.

Export Subsidies

1. Provide information on operational changes in measures

Export Credit,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s (Export financing)

1. Description of the program (classification within the following categories: direct financing support, risk cover, government to government credit agreements or any other form of governmental export credit support) and relevant legislation
2. Description of Export Financing Entity
3. Total value of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covered by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s and use per program
4. Annual average premium rates/fees per program
5. Maximum repayment terms per program
6. Annual average repayment periods per program
7. Export destination or group of destinations per program
8. Program use by product or product group

Food Aid

1. Product description

2. Quantity and/or value of food aid provided
3. Description of whether food aid is provided on in-kind, untied cash-based basis and whether monetisation was permitted
4. Description of whether in fully grant form or concessional terms
5. Description of relevant needs assessment (and by whom) and whether food aid is responding to a declaration of emergency or an emergency appeal (and by whom)
6. Description of whether re-export of food aid is an option under the terms of the provision of food aid

Agriculture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1. Enumeration of State Trading Enterprises
 - Identification of state trading enterprises
 - Description of products affected (Including tariff item number(s) encompassed in product description)
2. Reason and purpose
 - Reason or purpose for establishing and/or maintaining state trading enterprise
 - Summary of legal basis for granting the relevant exclusive or special rights or privileges, including legal provisions and summary of statutory or constitutional powers
3. Description of the functioning of the State Trading Enterprise
 - Summary statement providing overview of operations of the state trading enterprise
 - Specification of exclusive or special rights or privileges enjoyed by the state trading enterprise

Additional information subject to normal commercial confidentiality considerations

1. Exports (value/volume)
2. Export prices
3. Export destination

Information on policies no longer in operation due to significant policy reforms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 번역본(수출경쟁)

1. 모든 형태의 수출 보조와 이와 동등효과를 지닌 수출 조치들은 높은 무역 왜곡 효과와 보호주의의 형태를 가지므로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과 도하(Doha) 작업계획에 따라 농업협정 20조가 제시한 지속적인 농정개혁의 과정 속에 주요 우선순위 농업협상 의제로 남아있다.
2. 이러한 측면에서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에 명시한 대로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의 철폐와 이에 상응한 효과를 지닌 모든 수출조치에 관한 규율을 협상의 결과물로서 인정하고 다시 한 번 그 약속을 확인한다. 그 선언문이 제시한 2013년까지 그 약속 이행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3. 농업부문의 모델리티 개정안(TN/AG/W/4/Rev.4, 2008년 12월)은 수출경쟁 분야의 의욕적인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며, 여기에는 최빈개도국(LDC)과 식량 순수입 개도국(NFIDC)에 대한 특별우대조치도 포함된다.
4. 농업협정 아래 회원국들이 WTO에 통보한 정보에 나타났듯이 최근에 감축대상 수출보조의 사용이 감소하였고, 수출경쟁의 다른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5. 일부 회원국들이 시행한 개혁조치가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를 이끌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기초가 도하 협상에서 수출경쟁에 관한 최종목표달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6.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에 명시한 최종 목표를 가능한 빨리 성취하기 위해 도하 협상 아래 이 분야의 공고한 진전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회원국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7. 이에 따라 수출경쟁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국내 농정개혁 유지와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개혁이 갖는 양(+)의 영향과 반대로 개혁의 실패가 초래하는 심각한 음(-)의 결과를 감안할 때 이러한 방향에서 개혁을 추진해 온 회원국과, 아직 개혁조치를 단행하지 않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개혁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8. 위에 언급된 긍정적 기초들과 함께 홍콩 각료선언문이 제시한 수출경쟁 목표를 위해 모든 형태의 수출 보조와 그와 동등한 효과를 지닌 모든 수출 조치의 사용을 자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가능한 최대 범위로 시행할 것이다.

-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와 그와 동등한 모든 형태의 수출조치에 대한 규율
 - 회원국들의 수출보조 양허수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의 수출보조 수준 유지
 - 동등한 효과를 지닌 모든 수출 조치에 대한 비슷한 수준의 규율 적용
9.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이 수출경쟁에 관해 제시한 목적 달성은 발리 이후(post Bali) 작업 계획의 높은 우선순위로 남기기로 한다. 이 분야가 가능한 한 빨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작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한다.

10. 이에 따라 개혁과정을 지지하기 위해 투명성을 증진하고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와 이와 동등한 효과를 지닌 모든 수출조치에 관한 관측을 개선하기로 약속한다.
11. 따라서 수출경쟁 분야의 진전을 검토하기 위해 농업위원회가 해마다 이를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이 검토과정은 2005년 홍콩 각료선언문이 제시한 최종 목표를 진전시키는 측면에서 수출경쟁에 관련한 어떠한 문제라도 회원국들이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2. 이러한 검토과정은 관련 농업협정 규정아래 통보되는 정보 및 관련된 결정, WTO 사무국이 제시한 정보, 부속서에 제시한대로 2013년에 시행한 회원국 대상 설문지를 기초로 추진한다.
13. 10차 각료회의에서 수출경쟁에 관한 상황을 검토하기로 동의한다. 또한 이 선언문의 요건들이 해당 협정들이 다루는 회원국들의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해석하는데 사용되지 않아야 함에도 동의한다.

부속서

수출경쟁에 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요소들

이 부속서는 위 12항이 언급한 설문지와 관련 WTO 사무국에 의해 요구된 정보의 형태를 예시한 것이다. 이 설문지는 회원국들의 통보의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회원국들의 경험과 관점 측면에서 재편될 수도 있다.

수출보조

1. 수출 조치들의 운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출신용,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제도 (수출금융)

1.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다음의 분류: 직접 금융보조, 위험회피(risk cover), 정부 간 신용협정 혹은 정부 수출신용보조) 및 관련 규정
2. 수출금융기관에 대한 설명
3. 수출신용, 수출신용 보증 및 보험제도에 해당하는 총 농산물 수출액
4. 각 프로그램의 연간 평균 보험료율/수수료
5. 각 프로그램의 최대 분할 상환기간
6. 각 프로그램의 연간 평균 분할 상환기간
7. 각 프로그램의 수출 목적지
8. 개별 생산물 혹은 생산물 그룹의 프로그램 활용

식량원조

1. 농산물에 관한 설명

2. 제공된 식량원조의 물량과 가치
3. 식량원조가 현물, 조건 없는 현금 기준으로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화폐(monetization)가 가능한 지에 관한 설명
4. 완전 무상 혹은 양허 조건 아래 제공된 것인지에 관한 설명
5. 적절한 요구평가(needs assessment)와 식량원조가 긴급사태 선언이나 호소에 대응한 것인지에 관한 설명(주체 포함)
6. 식량원조의 재수출이 식량원조 제공의 조건 하에 가능한지에 관한 설명

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

1. 국영무역기업의 목록 열거
 -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확인
 - 관련된 농산물에 관한 설명(관세라인 포함)
2. 근거와 목적
 - 국영무역기업의 설립 및 유지 이유 또는 목적
 - 독점권이나 특권을 인정하는 법 규정
3. 국영무역기업의 기능 설명
 - 국영무역기업의 운영에 관한 설명 보고 요약문
 - 국영무역기업이 누린 독점권이나 특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

일반 상업비밀 고려사항에 관한 추가 정보

1. 수출(가치/물량)
2. 수출가격
3. 수출 대상국

상당한 정책개혁으로 인해 정책에 관한 정보는 더 이상 수집하지 않는다.

정책연구보고 P190
2013 DDA 협상과 향후 대응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4. 4.
발 행 2014. 4.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ISBN: 978-89-6013-607-6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